

2021학년도
석사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
연구

A Stud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 Women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배성희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

연구

지도교수 김형태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7월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배성희

배성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황 미 경



심사위원

공 정 원



심사위원

김 형 태



2021년 7월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감사의 글

한국에 입국하여 두 아들을 키우며 정착하느라 대학에 가서 공부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학문의 길을 안내해주며 체찍질하여 대학원까지 인도하여주신 사단법인 늘푸른상담협회 박정순 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병행하면서 대학원 학위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 논문을 쓰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인들의 도움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논문을 쓰느라 잘 돌봐주지 못한 속에서도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은 우리 맏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미안함과 감사를 표합니다. 또 가정행복상담센터 상담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대학원 공부하고 논문 쓰느라 수고가 많다고 힘과 용기를 주고 도와주신 상담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논문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본 논문의 주제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신 심사위원장 황미경 교수님, 공정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배움에 대한 열정과 제자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지지로 힘들어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시고 언제나 웃는 미소로 용기를 주시면서 끝까지 이끌어 주신 지도교수님이신 김형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연구참여자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자신들의 지난날 아픈 상처들을 들어내는 인터뷰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문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와준 대학원 동기들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석사논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국문초록	VI
Abstract	98
I.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목적	4
II. 문헌고찰	6
제1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6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6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8
제2절. 인권과 인권침해	12
제3절. 북한이탈주민이 적응에서 인권침해 현황	13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13
2.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념	16
3.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로 인한 해외사례	18
4.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현황	21

제4절.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연구동향	27
III. 연구방법	30
제1절. 질적 연구 방법	30
제2절.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33
1. 연구 참여자 선정	33
2. 연구 참여자 특성	34
3. 연구 참여자의 배경	35
4. 연구 분석방법	46
5. 질적 연구의 엄격성과 연구자의 선 이해	47
IV. 연구결과	49
제1절. 연구 참여자의 구성요소	49
제2절. 주요범주들에 대한 기술 분석	53
V. 결론	79
제1절. 연구 및 논의	79
제2절. 제언	83
제3절. 제한점	86

참고문헌	87
부록	95

[표 목 차]

[표-1]	7
[표-2]	9
[표-3]	14
[표-4]	20
[표-5]	26
[표-6]	32
[표-7]	34
[표-8]	50
[표-9]	53
[표-10]	67
[표-11]	72

[그 림 목 차]

[그림-1]	8
[그림-2]	15
[그림-3]	24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인권침해 관련 경험은 무엇이며, 중국과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이 사회정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정착과정 심리·정서적 요인’의 3개의 구성요소와 7개의 범주와 19개의 하위범주로 정리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에서는 3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로 정리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난은 고도에 달하면서 북한 여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중국에 가면 장사밑천을 마련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으로 가지만 말도 모르는 남의 나라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어 브로커들의 소개로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 혼인을 하는 등 인권침해 관련 경험을 하게 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은 1개의 범주와 3개의 하위범주로 정리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중국에서의 차별 못지않게 한국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주고 국적을 주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외국인이나,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정착과정 심리·정서적 요인 구성요소에는 3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다. 지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연구참여자의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차별과 편견을 받아들이는 대상자가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는가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기도 하지

만, 다른 연구참여자는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남한 주민들이 스치듯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흉기에 맞은 상처보다 더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인권침해 관련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비록 중국에서는 더 말도 못 할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언어를 쓰며 소통할 수 있는 한나라 한민족이라고 믿고 한국으로 왔으나 민족적 이념에 따른 배제,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몰지각한 사람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는 방면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을 더 각성시키고 행복의 기준을 낮추고 한국 사회에 대해 빨리 이해하는 것이 빠르게 정착하는 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 격려가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게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줌으로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단어 : 북한이탈주민여성, 인권침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 심리·정서, 마음의 상처, 배제, 민족적 이념, 차별대우

서 론

제1절 문제 제기

자유가 없는 북한의 정치적 압박과 ‘고난의 행군’¹⁾이라고 불리는 경제적 빈곤과 기아로 인해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자유로운 삶을 찾아 국경을 넘어 중국을 통해 탈북을 강행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 강제북송, 감금, 고문, 학대 등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 원인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취급하여 북한으로 강제북송을 당한 이들은 북한에서 모진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고초를 겪으면서 또다시 탈북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복합적 피해 상황이다.

인신매매(人身賣買, 영어: human trafficking)는 사람을 가축처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면서 사고, 파는 행위이다.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로서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형법 등으로 엄격히 금지하여 적발 시 적발국의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인신매매가 신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노예매매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합법적으로 행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이 인신매매를 불법화하여 엄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며,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가 지속되고 있다(위키백과). 강제북송에 대해 김태훈(2019: 24)은 중국 헌법 제 32조에 의하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내

1) 김일성 주석 서거하기 전부터, 1993년 ~ 1999년 사이에 일어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악의 식량난을 가리키는 말이다.

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면서 탈북민은 경제적 이유로 입국했으나 난민이 아니라며 ‘강제북송’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 후 탈북 형태의 특징 중 하나가 탈북의 여성화(이지연, 2017)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 2020)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20년 6월 기준 총 (33,670명) 입국(남 : 9,404명, 여 : 24,266명)이다. 이들은 탈북하여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각종 언론기사에 실린 내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여성신문, 2005)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인신매매되는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였다.

첫째, 북한에서부터 인신매매에 연루돼 강을 건너온 다음 미리 연계된 중국인에게 넘겨지는 경우이다. 둘째, 단독으로 압록강 또는 두만강을 건너오다 강변에서 인신매매단에 붙잡혀 팔려 가는 경우이다. 셋째, 중국의 내륙 도시까지 와서 역 앞이나 시장에서 인신매매단에 붙잡히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지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한 농촌 지역에서 여러명의 남성들이 돈을 모아 한 명의 여성을 사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5명의 남성이 한 여성을 공동으로 사는 경우 그 여성은 밤이면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잠자리를 해야 하고 낮에는 다섯 가구의 살림과 농사일을 해야 한다. 때로는 형제가 한 여성을 공동으로 사기도 한다. 매매흔으로 끌려온 여성은 촌락의 중요한 재산이다. 중국에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지만, (곽해룡, 2002: 3)은 국제사회도 세계무대에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북한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또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서 복합적인 피해자로 살고 있다. 김경미(2018: 7)는 북한이탈주민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차별과 소외감을 지각할수록 우울 수준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다. 정인성(2021)은 북한이탈주민의 (76.1%)를 차지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어려움보다 차별로 인한 우울증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정상우 외 (2016)은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부터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인권 유린이라 불리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돋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및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였다. 탈북민 차별에 대한 이유에는 말투·생활방식·태도 등 ‘다른 문화적 소통방식’이 (69.9%)로 가장 높았다(데일리굿뉴스, 2019. 05. 25).

김중태(2014: 2)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응은 결국 다수자인 남한 출신 주민과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 또는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김대욱, 2021: 186).

제2절 연구목적

1.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탈북과정과 중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한국정착과정에 심리·정서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찾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새로운 한국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요인인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위한 정책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보완에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 관련 문제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문제제기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기아와 배고픔, 정치적 압박으로 제 3국인 중국으로 탈북하고 있지만,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중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제 복송,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다.

김경숙(2016: 4)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그녀들의 사회적응과 경제적인 자립 정신건강과 안정적인 삶, 그리고 그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찾아내고 기초적인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중반 이후 남한 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과 갈등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사회의 역기능과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되었다(김중태, 2014: 23)고 하였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정부에서도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김재영, 2005: 2)이라고 하였다. 김명수 외 (2006: 89)는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힘든 요인은 무엇인가? 대한 물음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무시로 또 다른 인권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김경미(2018: 7)는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나 갈등의 상호 문화적응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²⁾이 조절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 중 언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범국민적인 관심을 홍보하는 것도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바라보는 일반국민들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중국에서와 한국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한국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경험은 무엇인가?

2) 사회적 낙인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김경미. 2018)

II. 문헌고찰

제1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순간부터 죽음과 여러 가지 힘겨운 시련을 겪으며, 복합적인 인권침해를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통일부, 2020)).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 북한이탈주민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결혼 ‘이민자’ 및 ‘귀환자’ 등 다문화 가족과는 근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통일부, 2020).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조선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4년에 처음 쓰인 ‘탈북자’는 법률상 용어로 1997년부터 쓰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해서 그동안 널리 써오던 용어인데 2004년 통일부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래 [표-1]같이 몇 차례 바뀌었다.

[표-1]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 정리

시 기	명 칭
• 1993년 이전	• 귀순자(歸順者), 귀순용사(歸順勇士)
• 1994년 ~ 1996년	• 탈북자, 귀순북한동포
• 1997년 ~ 2004년	•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 2005년 ~ 2008년	•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 2008년 이후	•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출처:위키백과(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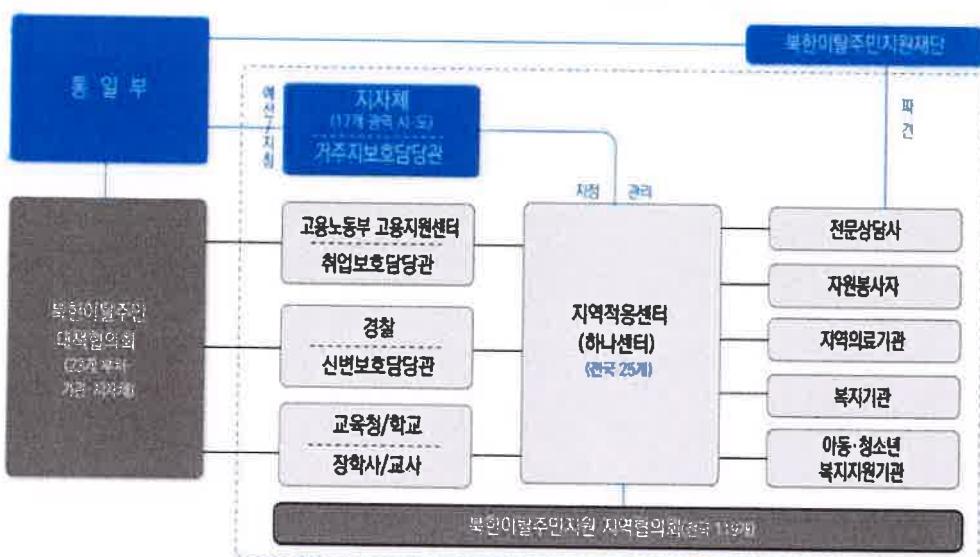
김혜원(2019: 1)은 북한의 사회적 기강 해이와 만연한 부패구조로 사회 통제가 약화 되면서 국경에서의 통제도 느슨해져 국경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생계유지를 위해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과 상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부는 일시 체류하다 귀환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두만강 혹은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거친 이후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머무르고 있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박정순, 2014).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1) 정착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은 통일 시대에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을 성공적으로 통합시키는 통일 미래를 위한 준비로 선진화와 복지의 문제와 연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정부-지방-민간이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림-1]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가 잘 설명되어 있다.

[그림-1] 정착지원 체계



출처:통일부 (202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2) 정착지원제도 주요 내용

- 사회적응교육 : 기본교육(하나원), 지역적응교육(지역적응센터)
- 정착금 : 기본금, 지방거주장려금, 취약계층보호 가산금
- 주거 : 주택알선, 주거지원금,
- 취업 :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고용 지원금(채용기업주에 지금)
- 사회보장 : 생계급여, 의료보호, 연금특례
- 교육 : 특례 편·입학, 학비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주요 내용을 [표-2]로 정리하였다.

[표-2] 정착지원제도 주요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 12주 400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 반 운영(영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 남성, 성인 여성, 경로) * 정서 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 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 탐색, 초기 정착지원, 생애 설계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지역적응 교육 (지역적응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역 적응센터 8일, 50시간 초기 집중교육 및 지역 적응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등
정착금	기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세대 800만원, 2인 세대 1,400만원, 3인 세대 1900만원, 4인 세대 2,400만원, 7인 세대 이상 3,900만원 * 초기지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분기별 분할 지급
	지방거주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2년 계속 거주 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거주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가산금(보고결정일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720만원

	보호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가산금 : 1,540만원(중증장애), 360만원(경증장애) ※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 등급 폐지(19.7.1.시행)로 장애가산금 지원금액 변경, 중증은 기존 1~3급, 경증은 기존 4~6급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시) : 1개월에 80만 원(최대 9개 월분까지 지급)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 : 세대당 360만원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00만원
주거	주택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2,300만원 * 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 500시간 이상 120만원, 620시간 이상 140만원, 740시간 이상 160만원 지급(국가 기관 전략산업과정 수료 시 200만원 추가) 자격취득 시 200만원 <p>※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은 폐지, 다만 2014. 11. 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 된 자에게는 적용</p>
	취업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간 근속 시 최대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의 1/2를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p>※ 고용지원금은 2014. 11. 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 된 자에게 적용</p>
	자산형성 제도 (미래행복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요건 :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소 거주지 전입 후 6개월 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을 것 - 적립목적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대상 : 2014. 11. 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 약정금액 :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 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 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 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시립대 50% 보조
상담	-	• 지역 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출처 : 통일부,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제2절 인권과 인권침해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07. 20).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차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말하고, 직업뿐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에 해당하는 경유 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집례 11집, 2019). 위의 내용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문의 결정사항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제3절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적응에서 인권침해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북한이탈주민 연간 입국 인원은 '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연간 (3,000명) 가까이 입국하였다.³⁾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접경지역 통제 강화 등으로 입국 인권이 감소하여 연간 (1,100 ~1,500여 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 때로 감소, 2020년에는 (229명)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 202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먹고살기보다 좀 더 좋은 삶을 찾아서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 12월 말 기준 (31,339명)이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9년도에는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백과사전, 2018).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입국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이전에는 여성의 비율이 (12%)였으나, 2002년에 (55%)를 기점으로 여성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여성의 비율이 (70%)를 지속적으로 넘다가 2015년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80%)까지 상회하였다(통일부, 2017). 2021년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여

3) (48년) 최초 귀순, (2007년 2월) 1만 명, (2010년 11월) 2만 명, (2016년 11월) 3만 명을 돌파하였다.

성의 입국자 수는 2001년 (45.8%)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85.2%)로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아래의 [표-3]에서와 같이 보여 주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여성들이 탈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주요 생계를 책임진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탈북으로 나타났다.

[표-3] 입국 현황표 (2020년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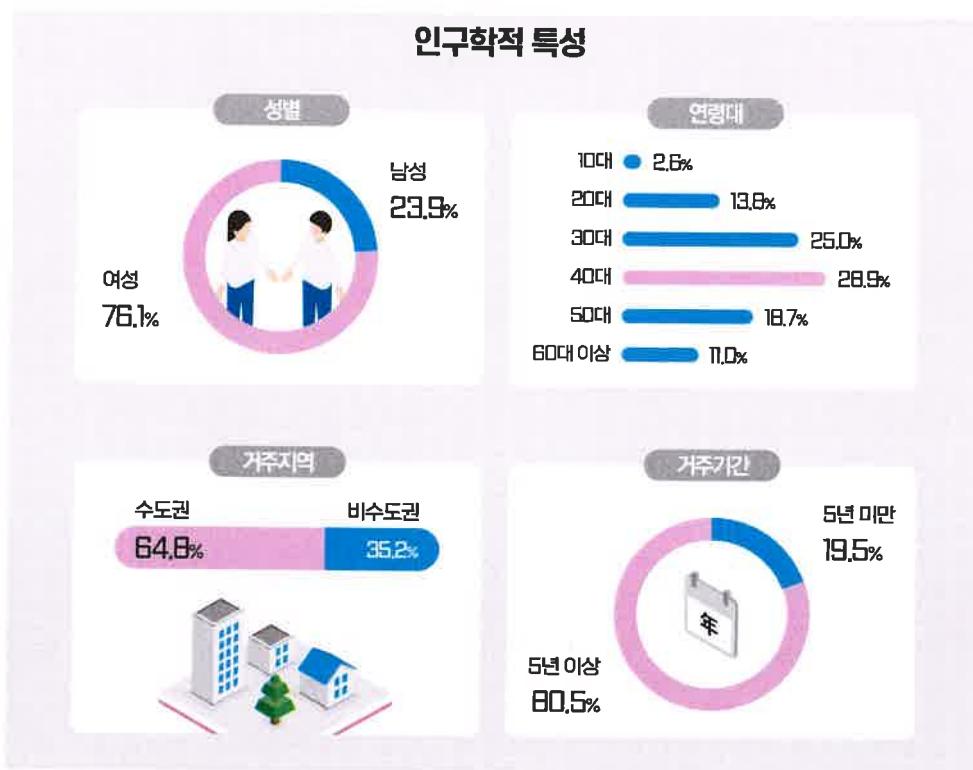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남 (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여 (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합계 (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여성 비율	12.2%	45.8%	55.3%	63.1%	67.0%	69.4%	74.6%	77.6%	78.3%	77.3%	75.4%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3 (점령)	합계
남 (명)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9,435
여 (명)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4,317
합계 (명)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33,752
여성 비율	70.6%	73.1%	75.6%	78.2%	80.3%	78.7%	83.3%	85.2%	80.7%	68.6%	72.0%

출처 : 통일부자료 (www.unikorea.go.kr, 2021)

1990년대 초 북한은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고난의 행군’이 후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20년 6월 기준 총 33,670명 입국(남 9,404명, 여 24,266명)이다(통일부, 2020).

2020년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 인구학적 특성을 아래 [그림-2]에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23.9%), ‘여성’이 (76.1%)이고, 연령은 ‘40대’가 (2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는 (25.5%), ‘50대’ (18.7%) 순위이다.

[그림-2]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출처: 남북하나재단(2021)

2020년 6월 말 기준 입국 인원은 147명으로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탈북 이동 경로 국가의 국경폐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북한 주민들도 한국에 살고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가족들이 차라리 데려가는 돈을 자신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와 국경단속이 심하여 점차 어려워지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념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또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많은 학자들은 인권개념을 필수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이진혁, 2019).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형성의 배경에 대한 이해는 북한과 탈북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한다(정상우 외, 2017).

정상우 외의 연구(2016) 북한에서 개인의 인권개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학교 교육’ (35.9%), ‘강연 및 학습’ (29.9%), ‘외부정보’ (15.6%), ‘북한 매체’ (12.1%), ‘주변 사람들’ (10.4%) 순으로 나타났다. 박호성 외의 연구(2005)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절반가량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수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윤나(2014)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과 실태는 심각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자신이 인권침해 받는 부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상우 외 (2016)의 연구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권침해 의식과 개념을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부족했던 것은 물론 인권 자체에 대해 그다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권 용어에 대한 접근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식 인권’ 용어를 들었던 경우에도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적었으며, 북한에서 인권을 대하는 관점이 ‘세계 인권선언’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북한주민이 받아들이는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국내 입국 후 인권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43.8%)가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으로는 하나원이 (30.8%), 하나센터가

(17.1%),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15.1%), 시민단체가 (11.6%)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인권 의식은 지식이나 신념과 관련된 인지적 요소, 인권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정서적 요소,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또는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실천 노력과 관련된 행동적 요소로 구분되기도 한다(이진혁, 2019). 북한이탈주민은 유아기부터 초중등 교육 기간에 이르기까지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해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다가 아주한 경험이 있기에, 이들의 인권 의식은 그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권 의식과 그 형성 배경이나 인식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정상우 외, 2017). 국내 입국 이후,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45.4%)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진단했고, 학력·학벌(25.7%) 비정규직(24.2%) 등 순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권리주체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차별에 적극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아시아타임즈, 2018년 09월 26일).

박호성 외의 연구(2005) 실제 조사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에 관한 의식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응답자 47명 중 48.9%(23명)가 인권이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취업,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문화, 언어 차이, 선입견 등으로 인해 느끼는 사회적 차별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북한에서 누리지 못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의사 표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셋째, 사회보장 또는 최소생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의 12.6%(6명)로 나타났다.

넷째, ‘자유’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4%(3명)로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으나, 응답의 맥락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대한 응답 4.3%(2명),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타인으로부터 감시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응답 2.1%(1명)를 종합할 경우 총 14.2%(7명)가 자유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탈북자들이 한국의 생활과 문화에 적응해가면서 자신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관점이나 ‘인권관’이 점차 변하기도 한다. 탈북자들은 대체로 인권을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3. 북한이탈주민 여성 인권침해 관련 해외사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에 입국하지만, 무국적자의 신분으로 낙인찍혀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중국에서의 인권침해를 다룬 구체적인 연구들이 많지 않아 논문자료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에서 겪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 사례를 정영선(2018)의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 여성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였다.

정영선(2018)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참여자의 인터뷰에서 “근데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일단은 팔려 간다고 해도 거기서는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로 인해서 또 가족도 살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한 입만 던다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한마디로 말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희생을 내

가 희생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나도 살 수 있고 가족도 살 수 있고”라고 하였다. 인신매매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 여성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인에게 중국에서 돈을 벌어 올 수 있다거나, 또는 중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에서 돈을 벌자는 권유를 받고 갔다가 인신매매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채명자(2018)의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국경을 무사히 넘어 목숨은 건졌지만 그런 안도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불법체류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였다. 생존을 위해 인신 매매 브로커를 통해 중국 0000의 깊은 산골 마을의 13세 더 많은 남편에게 매매혼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박순성(2009)은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국적 없는 삶이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에 호소할 수 없고, 경찰이 전화해서 북한사람이냐고 물어도 일자리를 옮겨야 하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닌 생활을 하였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하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영선(2018)은 대부분 여성은 중국의 남성에게 팔려 가 강제적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등 여성성을 착취당했다. 김이경(2019)은 중국인 남성들은 불법으로 돈을 주고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으로 한 가정의 아내로 맞이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사고파는 노예 인양 그 삶 자체는 인권이 없는 노예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신들이 ‘구매된 재화’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매자’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중국에서 불법적인 존재, 즉 신분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중국인들은 공안에 신고하지 않은 대가로 이들을 성적 희롱을 하거나 노동 착취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안에 적발되어 강제적으로 북송되면 북한의 엄중한 처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대와 착취를 감수하면서 살아야만 한다.

정상우 외의 연구(2016)는 결국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이주여성들과 다르게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비 국민적 존재로 생존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상우 외 연구(2016: 46)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에 강제송환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난민으로 볼 경우에는 북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난과 압박도 정책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부여를 둘러싼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고 하였다.

정영선(2018)의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경험의 구조를 총 10개의 하위개념과 3개의 개념에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표-4]로 정리하였다.

[표-4] 인신매매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 본질 구조

하위 개념	개념
선의의 다른 얼굴, 배신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
극심한 빈곤 속 상품화된 여성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돈에 팔려간 신부	출구 없는 세계
정서적·신체적 학대	
불가능한 귀향길	
현실과의 타협과 적응	
좁혀오는 체포망	
더 나은 삶, 중국보다 한국	
한국으로 통하는 문	탈출구의 발견

출처: (정영선, 2018) 재구성

정영선(2018)은 이들은 눈앞에서 자신의 몸값이 정해지는 것을 목격하

였고, 자신이 돈을 지급하고 구매한 재화라는 사실은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지만,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중국에서의 인권침해에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이 유린 된 많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가까스로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오게 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또다시 한국에 입국 후 정착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치유 대신 인권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4.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현황

정상우 외의 연구에서(2016)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본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출신에 대한 차별(45.5%)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진단하였고, 학력·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순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⁴⁾ 정상우 외 연구에서(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연구 결과를 보면,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은 일반 시민 (20.6%), 직장 상사 (17.9%), 직장 동료 (16.5%) 순으로 나타났다. 박순성(2009)은 취업을 위해 취업소개소를 찾아간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설득하여 일본, 영국, 미국 등의 유홍업소로 소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외국으로 ‘팔려 간 사례’를 이야기하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일상 생활속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4)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 실태조사에서는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이 10% 이상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정상우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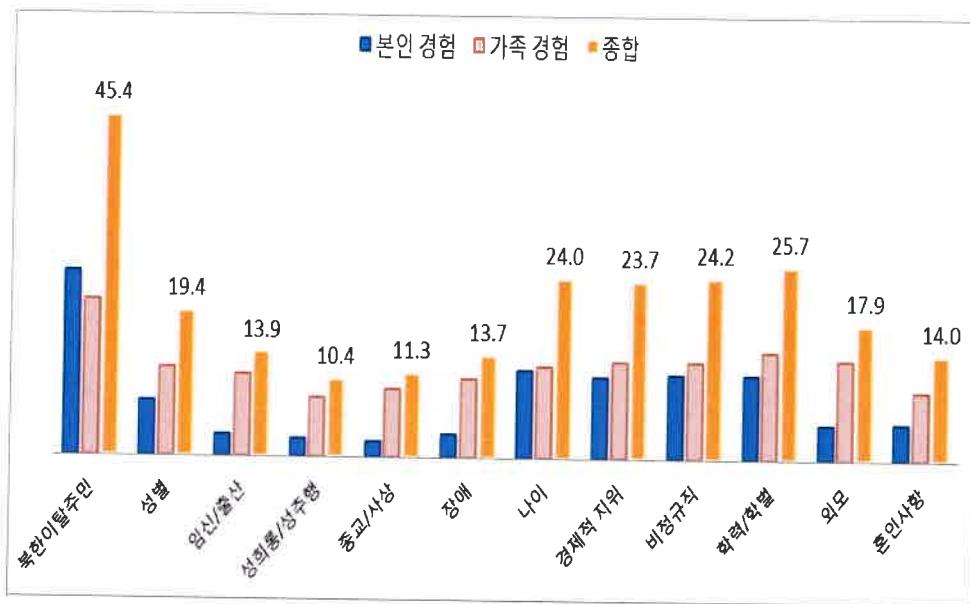
각급 담당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달갑지 않은 사회복지 수혜자로 바라보기도 한다고 하였다. 제도에 정해진 지원금 및 사회복지 혜택을 문의하는 경우에 겪게 되는 수모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이들파의 접촉을 꺼리거나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남한 사회의 ‘3등 국민’으로 생각하는 차별적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면접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 교포를 쓰지, 북한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고 하였다. 박호성·이규영·김영수·진희관(2005)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의견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승진 차별은 (52.7%), 소득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50.5%),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38.6%)로 나타났다.

김성남(2019)의 연구참여자 진술서에는 동등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차이 나는 임금을 받는 인권차별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였다. 박호성 외(2005: 94)의 연구에서 많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남한 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자신들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못 먹고 못살다가 와서, 먹고 사는 거나 다행으로 알면 되지...’라는 같은 말도 자주 들었으며, 탈북자 중 한 지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동의 아주머니들이 ‘혼자 나오는 게 빨이 떨어지더냐? 밥이 입안에서 넘어가냐?’라며 질책한 적도 있어, “마음도 아프고 외로운 상황에서 이러한 남한사람들의 인식과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장 큰 인권침해”라는 의견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제3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국민 만들기’ 과정인 국정조사에 성매매와 관련된 여성들을 ‘스스로 타락한 여성’ 혹은 ‘몸을 버린 여성’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

의 낙인과 연결되면서 또다시 정신적 상처를 심화시키는 조건이 된다(박순성, 2009).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귀순 영웅’에서부터 ‘외국인 대체인력’으로 대해 왔다(김재숙, 2018).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인권의식 및 인권보장과 관련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차별적인 시선과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돋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및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서보혁, 2017). 이금순 외(2003)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이유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가 응답자의 (40.1%)를 차지하여 출신 지역이 가장 커다란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출신 지역이 북한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력 없이 기대 수준이 높아서’ (1.7%), ‘말투가 달라서’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편견을 갖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5.6%)를 표출하고 있다. 전문학교 이상 고학력자일수록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본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출신에 대한 차별(45.5%)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진단하였고, 학력·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순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래의 [그림-3]과 같이 보여 주고 있다.

[그림-3] 남한에서 인권 차별경험 여부



출처: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박호성 외(2005)의 연구에서는 거주지 배정 이후 담당형사의 역할에 대해 ‘과잉’친절의 사례와 인력 부족의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조아영(2015)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성남(2019)은 한국에 대한 기대로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탈북민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모욕적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온 말 한마디 “탈북자주제에”였다. 실제 90년대는 먹고살기 위해 탈북을 하였다면 2000년 이후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좀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실제 남한사람들에 비해 학력이 높은 수준이다. 오은경(2018)은 북한이탈주민은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이직을

선택하고 직업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이경(2019)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남한주민들의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 등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남한사람들과 차별을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북한말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으며, 일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화진(2010)의 논문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라서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가난한 북한 출신이라 무시해도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등 ‘북한출신’이라는 점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억압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김혜원(2019)은 북한말투나 사고방식 순서가 지방 특성의 하나로 남한과 서로 다를 뿐인데 일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나쁘고 잘못이라는 편견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해소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윤병율(2017)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없이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문제점 등이 많다고 하였다. 선행논문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면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취업에서나 사회에서는 물론 가정에서까지 북한이탈주민 여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차별과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권도 보장이 되지 않은 북한을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지만, 한민족임에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에 의한 상처로 또다시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탈남’하고 있다.

김성남(2019)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남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상황을 본연구의 주제에 맞게 [표-5]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표-5] 밀어내는 한국상황

인권침해 요인	인권침해 세부 사항
---------	------------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에 편견과 차별로 받은 상처	손녀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아 적응 못 함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는 사함 차별에 대한 환멸
	아들이 고등학교 위원장 선거에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추천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데 크게 실망
	간첩 사건이 터지면 혹시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차별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들어야 함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장 치명적이며 가슴 아프게 하는 말 “탈북자주제에”라는 발언
	남한사회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도전으로 자신을 준비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음
	북한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함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편견

출처: 김성남(2019) 재구성

제4절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연구동향

2000년대에 들어 탈북 여성의 입국 배경, 입국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회적응 과정에서 제도나 정책의 문제점을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다뤄지게 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내용의 다양성과 영역별 심층분석 면에서도 성장하는 추세이다(박정란·강동완, 2011).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많았으며, 현재 심각한 북한 인권에 대해 세계적으로 다룰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제외한 중국과 남한 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문제를 다룬 연구들만 살펴보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취업에서 북한말투와 외래어에 대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시와 차별로 직업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혜은, 2019). 북한이탈주민 여성들 중 다수는 복합적인 사회정치적 조건과 삶의 배경 속에서 인신매매,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된 여성들을 스스로 타락한 여성으로, 혹은 몸을 버린 여성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낙인과 선입견이 연결되면서 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심화시키는 조건이 되는 국정원 등 대한민국 국가 기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 정서적 사회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박순성, 2009).

신미녀(2010:)의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편견을 갖는 이유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가 (38.8%)로 가장 높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서’ (29.0%),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편견이 없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응답률이 남한 주민 (36.8%), 북한이탈주민 (60.4%)가 동시에 높게 나왔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적응에 대한 개인의 노력 부족'이 (4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가 (37.6%)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은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의견이 (67.6%), 소득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50.5%), 승진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52.7%),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38.6%)이고,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탈북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153명 중 30명으로 약 20%에 이르고 있다(박호성, 2005).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우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 체류지인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인신매매, 강제 매매혼, 성폭력, 임금착취와 학대에 노출된 많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시간이 경과 되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남한 사회의 정착과 사회적응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양민숙, 2017).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인신매매 조직에 의한 인신매매 혼이거나 강제 결혼 또는 소개 등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혼으로 합법적인 호구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하여 자녀를 갖게 되면 자연히 사생아로 자랄 수밖에 없으며, 인신매매를 당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대다수 알코올 중독자, 도박꾼, 성격파탄자 등 팔려 가 감금 및 감시를 당하며 폭력과 원치 않은 임신, 강요에 의한 폐춘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무조건 강제 북송하는 중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국 내 은신하여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환경에 의지해서라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승진, 2006).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

는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적응상 어려움에 직면함과 함께 북한과 다른 자녀 양육 방식에 적응하는 과제까지 이중의 어려움을 경험한다(윤정연, 2019).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의 가해자 식별 및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 문제는 온전히 본인이 평생을 짚어지고 가야 할 정신적 심리적 장애 요인으로 되고 말았다(이소희, 2017).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남성과 혼인한 뒤 그곳에서 출산하고 상당기간 동안 살아가는 현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는 그 자녀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김미주 외, 2020).

위의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중국에서의 인권침해와 한국에서 인권침해 관련 경험의 원인과 문제점을 본 연구와 비교 분석하여 선행연구에서 미흡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한국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경험의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중점을 두고 파악함으로 북한이탈주민 여성 인권침해 관련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제1절 질적연구방법

질적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가 아니라 자료를 아무런 편견 없이 분석, 분류, 통합하는 과정으로 다룬다(김형태 외, 2020: 46).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중국과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인터뷰를 통하여 지속적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질적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 ‘진술문’을 가지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그로부터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 나가는 일반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에 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찾아 참여자에게 인터뷰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종료 후 자료의 폐기, 인터뷰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인터뷰 참여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였고, 사전에 서면 동의와 인터뷰 내용의 녹취를 허락받은 후 1:1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각 1부씩 문서화 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 연구목적과 연구 절차,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보장, 비밀보장과 연구종료 후 자료의 폐기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게 될 것이고, 인터뷰의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

이 연구목적과 연구 참여 동의서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 후에 문서화 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의 휴대폰에 녹음 파일로 저장되었고 논문의 완성 이후 지워질 것이라란 것을 고지하였다.

2. 질문내용

[표-6] 인적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년	월	일
3) 성별	1) 남자	2) 여자	
4) 남한 거주지역			
5) 북한탈북년도 (마지막 도강했던 년도)	년		
6) 남한 입국년도	년	월	

인터뷰 질문

1. 중국에서 겪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 관련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 남한에 오신 이후 겪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 관련 문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3. 중국과 한국에서 겪으신 인권침해 관련 문제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다르지요?
4. 중국에서 겪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 관련 문제에 대한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5. 한국에서 겪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 관련 문제에 대한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제2절 연구 참여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인터뷰는 2021년 3월~5월에 시행하였으며, 연구자와 참여자가 1:1 방식을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가량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허락하에 녹취하여, 1차 2차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사단법인 늘푸른상담협회 상담실에서 인터뷰 녹음을 계속 경청하면서 녹취록을 완성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연구 참여자 선정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기초적인 정보제공을 받아 선정하여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내 거주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고, 한국입국 후 거주지역이 서울 1명, 수원 1명, 일산 1명, 인천광역시 2명, 총 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현재 기준으로 한국사회정착 10년 이상, 40대~50대 북한이탈주민 여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제 3국인 중국에 본의 아니게 넘어갔다가 인신매매로 인권침해를 경험한 대상이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 과정에 인권침해 관련 경험을 체험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표-7]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7] 연구 참여자의 특성

(2021년 5월 기준)

연구 참여자	나이 (세)	거주 지역	인권침해를 경험한 나라		탈북년도	입국 년도	가족구성	직업
			국가	체류 기간			배우자 국적	
1	52세	경기도 수원시	중국	15년	1995년	2010년	독신	자영업
			한국	11년	2009년		없음	
2	50세	서울시 양천구	중국	6년	2008년	2014년	자녀	아르바이 트
			한국	7년	—		한족	
3	41세	경기도 고양시	중국	11년	1998년	2009년	배우자, 자녀	전업주부
			한국	11년	2007년		대한민국	
4	47세	인천 광역시	중국	3년	2005년	2008년	배우자, 자녀	자영업
			한국	13년	—		조선족	
5	47세	인천 광역시	중국	9년	1998년	2007년	배우자, 자녀	회사원
			한국	14년	2005년		대한민국	

3. 연구 참여자의 배경

1)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1>은 북한에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화교들과 거래를 하다 보니 북한에 없는 원단을 사려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 그것도 위안도 달려도 아닌 북한 돈을 차고 무턱대고 건너갔다 오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중국 사람이 데리고 가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팔려 다닌다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하였다. 그러다 집주인이 여자들을 팔려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해서야 자신이 팔려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중국 안쪽까지 너무 많이 들어와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여기 포톨이⁵⁾들이 많아 여자가 없는 사람에게 판다는 설명을 해 주면서 그 대상자가 70대가 될지 20대가 될지 모른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주인아저씨 도움으로 인신매매단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중국의 안쪽까지 들어가 돈도 없고 말을 모르니 일자리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은 막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조선족 가계에 가서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여자를 무턱대고 따라가 도와달라고 사정하여 그 여자를 따라갔지만,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방법은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말을 배워야 하지만, 아무도 없는 남의 나라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수있는 방법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야 하니, 자신이 따라간 조선족 여자 시어머니의 소개로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똑똑하다고 하여 팔리는 것보다 났다는 생각으로 25살에 시집가 살면서 인신매매단에 팔릴뻔한 격분과 분노로 지금도 그때 잊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남편은 비록 장애

5) '홀아비'의 방언(평북, 중국 요령성)

인이기는 하지만 시집도 남편도 잘 해줘 다른 일없이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부모님이 계시는 북한으로 가고 싶었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3년 사는 동안 탈북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은 다 팔려 오면서 브로커한테 당하기도⁶⁾ 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팔려 온 북한 여자들은 돈 주고 사 왔기 때문에 물건 취급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1998년 그때 중국에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줄 그때 알았다. 그때부터 연구 참여자는 공안에 잡혀가면 시아버지가 돈 주고 빼내 오고, 1년에 최소 7번 잡혀가고 많이 잡혀가면 12번도 잡혀갔다. 그러다 공안에 주는 돈이면 차라리 나를 달라고, 엄마도 보고 싶고 하여 그냥 북한으로 북송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우리 집에서 내 호적을 없애버리고 집을 이사하여 북한집결소에 1년을 있으면서 중국에서 잡혀온 여성들은 짐승 취급도 못 받고 인권을 무시당하는 참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구치소에 1년 동안 있은 것은, 우리 집에서 내 호적을 없애⁷⁾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년 만에 북한집결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왔지만, 더는 마음 줄이며 중국에서 못 살겠다고 남편하고 말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하나원에서 나와 디자이너가 꿈이여 산업예술전문학교 다녔다.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의 소개로 봉제 공장을 갔는데 초보라고 월급이 80만 원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북한에서 봉제 경력이 있지만,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말투가 그러니까 ‘북한사람이’인가고 물어보고는 터무니없는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자신은 못 받아도 120만 원은 기본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

6) 강제추행

7) 1차 인터뷰에서 <참여자1>의 가족이 <참여자1>의 호적을 없앤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다. 참여자의 특성을 작성하면서 <참여자1>의 호적을 없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2차 인터뷰를 요청하여 다시 확인하였다. 왜냐하면, 북한 정치하에서 가족 호적을 없애는 일은 불법이며, 권력자와 함께 금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참여자1>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집에서 내 호적을 없앤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동생이 보위부 계통에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내가 결림들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없는 사람으로 되어있다.

신이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하여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첫날 출근하여 일도 더 잘하고 손도 빠르다고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다.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 급여는 3달 만에 10만 원 올려주고 6개월 만에 더 올려달라고 하니 못 올려주겠다고 하였다. 제일 급여가 낮은 사람이 140만 원인데 나는 100만 원도 못 받고 일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월급으로 생활을 못 한다고 하니 집은 나라에서 준 게 아니냐고 하였다. 나는 월세집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하였다.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자 사장이 월급을 한 번에 60만 원 올려주고 거기다 밥값이랑 10만 원 하여 6개월 만에 내가 180만 원까지 급여를 받았다. 내가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탈북자라고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한국 사람은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뭐 북한에서 왔을 뿐이지 외국인 노동자나 뭐가 다른 게 있느냐고 대놓고 말했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도 사람이냐고 어떻게 그거 국민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고 나에게 말하니 ‘천안함 사건’에 내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나는 이미 대한민국에 와 있었고, 북한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해 왔는데, 그런 요소 하나하나로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인권 유린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보게 된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 잘하고 손이 빠르고 어리기도 하고, 내 일만 하지 않고 손에 집히고 눈에 보이면 다 하니 칭찬도 많이 받기도 했다. 그러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나이 어린 게 들어와 사장한테 꼬리 친다는지 또 탈북자가 왔으면 나라에서 돈 주고 다 먹여 살려주는데 집구석에 앉아 놀지 뛸 하려 나와서 남의 임금을 착취해가냐? 하는 말에 격분하여 참지 못하고 싸우다 보니 쌍방 폭행으로 결국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싸우게 된 동기는 상대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 싸움이 시작되었고, 사람을 인격 모욕하여 참지 못하고 폭행은 먼저 하였다고 인정했다. 그 일로 벌금이 300만 원 나와 담당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벌금이 80만 원으로 문제해결은 했지만, 그 문제로 사람이 무서워

지면서 누구도 만나기 싫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다. 그 일로 수원에 있는 봉제 회사가 다 연결되어 여기서 나오니까 다른 데를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다가와 그때부터 사람이 싫어졌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그 때부터 사람을 피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일도 내려놓게 기초수급자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는 중국에서 당한 인권침해 경험은 돈 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용하게 살면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호적 있고 정정당당함에도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 것이 더 힘들고 사람이 다 싫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

2)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2>는 아는 사람을 통해 중국에서 장사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중국으로 넘어오자 초가집 같은데 우리를 방에 가두었다. 거기에 다른 방에 여자 3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팔려 갔다가 도망 온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만 남기고 우리 2명을 데리고 중국(청왕도)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남자를 만나게 하고 좋으면 동그라미, 싫으면 엑스, 하라고 했다. 연구 참여자가 다 싫다고 하여 혼자만 남고 2명은 팔려 가고 혼자 심심산풀 더운 지방에 팔려 갔다고 한다. 그 집에서 화장실 가도 따라오고 움직이는 데는 다 따라왔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는 계속 도망가니 (승합차)에 남자 3명이 와 안가겠다고, 내가 살던 곳으로 다시 보내 달라고 발버둥 쳤지만, 개처럼 끌려갔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는 인신매매 브로커에게 도망쳐 나오면 다시 팔려 가겠으니 그 돈 절반을 북한에 있는 우리 집에 보내 달라고 어차피 돈 때문에 중국까지 팔려 왔으니 이왕이면 도

땅 못 가고 중국에서 팔려 갈 건데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하여 도망쳐 나와 지금 아이 아빠네 집으로 팔려 잤다고 임신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을 판 여자가 중국에 왔던 김에 보고 가겠다고 하여 만나러 나갔다가 웬 남자 2명이 승합차에 납치하여 처음에 팔려 간 사람에게 다시 잡혀갔다. 연구 참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악한다고 쇠사슬을 대들보에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겠다고 위협하고 계속 발악하니 저수지에 던지면 고기밥이 된다고 귀신 모르게 죽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아기를 낳았고 계속 감시 속에 살다가 아기 아빠가 찾아와 극적으로 탈출하였지만, 처음에 팔려 간 집에서 공안에 신고해 공안에 잡혀가 북송되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누구인가만 확인하고 아기 아빠에게 보내주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처음에 팔려 간 놈이 찾아올까 봐 양을 치는 산속에 들어가 살다가 기구하게 태어난 아이가 돈이 없어 호적도 없이 중국에서 살게 할 수가 없어 한국행을 결심하고 먼저 한국으로 왔다고 하였다.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찾아온 한국 역시 이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하였다고 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면접 볼 때 차라리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게 더 편하고 났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는 게 더 싫은 이유는 친구가 한국 여자와 싸우는데 상대가 하는 말이 “야! 이 거지같은×아 너희×들은 북한×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왜 남의 땅에 와 우리를 못살게 하냐! 우리 세금을 뜯어먹는 거냐”고 하였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나도 조선사람이라고 내 땅이라고 내 땅에 왔는데 어디를 가라느냐? 하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 일 해도 먹고 살지만, 너희는 돈 없지? 너희들은 거지지” 하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아 가슴에 한이 맺힌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공부하느라 서강전문학교에 다닐 때도 학생들이 떠든다고 선생이 들어와 “북한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가 없지! 하는 말이 너무 싫었다고 하였다. 북한사람이라고 못 박아

하는 말이 너무 싫다. 신변 보호만 된다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중국에서의 삶이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지만, 한국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만약의 경우 그냥 한국에서 산다면 사람이 적은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3) 연구 참여자 3

<연구 참여자 3>은 북한에서 많은 돈을 사기당해 고민하던 끝에 아는 사람이 중국에 가면 목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 초소 단속이 심하여 걸어서 연길의 어느 집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는 중국에 가서 우리를 팔아먹는다. 팔아먹겠구나! 하는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잡히지 말아야겠다는 한 가지 생각만 하였다고 한다. 시간이 걸리면서 자신들에게 여기는 잘 살고 여기서 안전 하자면 팔려 가야만 된다고 하면서 한쪽 남자에게 보내면서 여기서 돈을 벌고 있으라고 하였다. 이미 팔려와 아들 쌍둥이를 낳고 사는 북한 여자가 와서 하는 말이 사실 웃동네⁸⁾ 보다는 먹을 게 많고 창자마다 곡식이 가득하여 먹을 걱정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나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집에 들어가 얼마있지 않아 애를 가졌는데 시집에서 브로커들한테 성추행당하여 생긴 애라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애를 지우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애를 지우는 게 그런 의도에서라는 생각 못 하고 집에 손녀가 한명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산아 제한으로 자녀를 한 명밖에 낳지 못한다고 하여 그대로 믿고 병원에 가서 나의 의사결정과 상관없이, 나의 동의 없이 자기네 생각대로 결정하였다. 족쇄로 묶어간다는 흉내 수술장에 시어머니도

8) 북한을 이르는 용어

동반시켜 화나고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 무조건 조선식당에 찾아가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교회에 데려가 주었다고 하였다. 그 교회가 연구 참여자의 안식처가 되었다고 교회에서 지금 남편을 만난 집을 잡고 생활하면서 공안이 수시로 나타나면 숨어야 하고 불안함과 탈북자들은 보호 없이 인정해주지 않아 한국행을 결심하고 먼저 한국으로 오고 나중에 남편이 왔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남한에서 와서 일자리 때문에 ‘벼룩시장’ 신문을 가져다가 전화로 문의하면, 말투가 강하니 어디 북한이예요? 아니면 중국 교포예요? 막 이러면서, 무시하는데 인천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많이 있고 또 해외(동남아, 베트남)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조선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억양이 세니 중국 교포냐? 아니면 탈북자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속이 뜨끔하면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부러 ‘벼룩시장’ 신문을 보면서 ‘교포 가능’이라고 한데 전화하면 용기가 생겼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말투를 가지고 그러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편견과 차별로 인한 영향이 자신을 더 각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에 정착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점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였고 이런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안되면 자살하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안타깝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행복의 기준을 낮추고 노력하면 잘 이겨 나갈 수 있고 한국에서 겪는 인권침해 경험은 본인이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헤쳐나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걸 깨우치게 한다고 하였다. 또 연구 참여자는 내가 미국에서 왔다면 이런 대우를 할까? 잘사는 나라에서 왔으면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남한사람들의 시선은 ‘거소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이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을 2등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4) 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4>는 24살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누워 앓고 있어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울 때 같은 직장에 다니는 아줌마가 5월에 중국에 가면 벼농사, 모내기 한 달만 일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벌어 엄마 약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공장에 엄마 약 구하러 간다고 하고 그 여자와 같이 가면서 중국은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돈을 벌어 다시 북한으로 오겠다는 생각으로 중국에 갔지만,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 순간 자신이 사기를 당한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는 중국에 와보니 북한하고 너무 차이가 났다고 하였다. 그때 북한은 풀뿌리, 벼 뿌리 갈아 먹고 살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차라리 빨리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한 달 만에 한족 마을에 팔려 갔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나 애를 낳고 살면서 앓고 있는 엄마를 두고 온 걱정으로 엄마와 연락을 하려던 중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북송되었다고 하였다. 그때 연구 참여자는 어린아이와 떨어져 북송될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 걱정하던 엄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다행히 운이 좋게 2000년에 중국에서 잡혀 온 사람들 다 살게끔 해 주라는 김정일 방침으로 바로 풀려났기 때문에 엄마를 모시고 다시 중국으로 왔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팔려 왔기 때문에 도망갈까 봐 가족에게 감시받고 살았고 또 북한에 잡혀갈까 봐 마음졸이며 사는 게 싫어 한국에 가려고 결심하고 2008년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에 입국하여 강원도 춘천에

집을 배정받아 살면서 어디 가도 북한사람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잘 해줬다고 하였다. 현재 연구 참여자는 전동드릴 텁이랑 만드는 공구회사에 다니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없이 회사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의 친구는 아직 자기 아이에게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 못 하고 있으며 어디 가서도 북한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면?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굳이 북한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 말에 상처를 받아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자체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엄마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아이가 학교 가서 위축될까 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는 그런 부분에서는 당당하다고 하면서 친구는 내성적이고 마음이 약하고 자신은 자아가 강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5)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 5>는 2007년에 한국에 갈 목적으로 중국에 발을 붙이는 방법이 팔려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한족 사람에게 스스로 팔려 갔다고 하였다. 2008년도에 한번 그 집을 빠져나와서 한국에 가려고 도망쳐 나왔다가 그 집에서 공안에 신고하여 다시 잡혀 들어간 때부터 자신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하였다. 바깥출입을 아예 금했고 동네 언니네 집에 가도 시어머니가 항시적으로 뒤따라와 시어머니에게 뭐라 했다고 시집 사위가 자신에게 손찌검까지 당하였다고 하였다. 또 중국에서 살면서 밤에 불빛이 비치면 잠을 못 잤다고 한다. 불빛이 비치면 공안 차와 자신을 잡혀가 북송될 수 있는 불안 때문에 항상 집에 쉽게 넘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쉽게 빠져나갈 생각만 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는 불안 속에서 살면서 남편에게 한국 보내 달라고 말했지만. 애가 좀 커야 하고, 한국 가면 일 많이 해야 하니 피곤해서 여기가 편해 그냥 살라고 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시민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북송으로 불안하게 살 수 없어 한국 선이 잡힌 언니와 약속하고 나왔다가 시집 가족이 공안을 풀어 잡혀 다시 집에 데리고 갔다. 그때부터 감시가 시작되고 말을 모르니 욕을 해도 뭐라고 욕하는지도 모르고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다. 연구 참여자는 그때 인권침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수모를 당하고 살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에 와 아는 지인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으나 매일 술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는 데다 술만 마시면 언어 폭행으로 하면서 ‘빨갱이’라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는 그 땅에서 빨갱이 소리 듣기 싫고 그 땅에서 태어난 게 싫어서 한국까지 왔는데 남편에게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폭행을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에 가면,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는 줄 아니, 이 빨갱이×아! 네 편을 들어 줄 거 같냐?’고 경찰들 앞에서 말해도 경찰들은 부부싸움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에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진짜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남편이 칼을 들고 있어 위협을 느끼는 등 한국에 입국하여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민족 심지어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가 가슴에 비수로 남아있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말을 몰라, 못사는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로 수모를 받았고 한국에서는 같은 민족 같은 말이 통하는데도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배우자로 같이 산 사람에게까지 빨갱이란 말을 들으니 죽으려고 했다고 한다. 같은 국민인데도, 빨갱이라고 하고 저 탈북자 새끼들은 하나도 도와주면 안 되고 죽여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그 시간을 없었던 시간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연구 참여자는 사람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해가 뜰 날이 꼭 있다고 꼭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다는 거, 나는 지금 느끼고 있어, 한국입국 10년 넘었는데 5년 동안은 죽지 못해 살았고, 지금은 좋은 남편을 만나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힘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4. 연구 분석 방법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연구자의 관점과 시각은 연구의 진행 과정 중에 무엇을 볼 것인지에 영향을 주며, 면접 과정의 의사소통하는 방식과 자료의 해석에도 영향을 준다(Glesne, 2006; 김여주, 2018 재인용). 하였다. 하여 본 논문에서 연구 참여자와 공감대를 만들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질적 연구 방법은 인간 경험의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있는 사람의 시각’에서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으로부터 의미를 도출하고자 할 때에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Padgett, 1998; 강해성, 2011: 14 재인용).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녹취록으로 전환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로부터 공통적인 주체를 찾아내는 일반적인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종료 후 자료의 폐기, 인터뷰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인터뷰 참여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였고, 사전에 서면 동의와 인터뷰 내용의 녹취를 허락받은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록으로 만들어 5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녹취록에서 본 연구의 주제들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분석하였다.

5. 질적 연구의 엄격성과 연구자의 선 이해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엄격성이란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와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Lincoln, & Guva, 1985; 양민숙, 2017: 28). 데보라 패짓(Deborah Padgett, 1998b)은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평가하는 가장 주된 기준은 신뢰성이며 이 신뢰성을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로서 반응성, 연구자의 편향, 응답자의 편향이라고 하였다(Allen & Earl, 2007; 김성남, 2019: 33).

본 연구에서는 라포(rapport)형성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과 단순한 사무적인 언어소통의 수준을 넘어 서로가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제고 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라포(rapport)형성은 Lielow가 제안한 것으로 연구 참여자의 거짓말, 반응성, 연구자의 편견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Lielow, 1993; 양민숙, 2019: 28 재인용).

질적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가 아니라 자료를 아무런 편견 없이 분석, 분류, 통합하는 과정을 이룬다 이런 과정을 통합하는 과정을 이룬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결론에 이른다(김형태·이수천·박재학, 2020). 본 논문의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본 논문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사단법인 늘푸른상담협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내담자들의 심리·정서적 내면을 읽을 수 있는 경험을 쌓아옴으로 참여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또 본 연구자 역시 북한이탈주민 여성으로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 문화의 이질성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적응해 왔으므로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라포(rapport)를 형성하여 무리 없이 인터뷰를 3차에 걸쳐 진행할 수 있었다. 1차를 진행하고 부족한 점을 2차에 거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3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인

터뷰는 1:1로 사단법인 늘푸른상담협회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제1절. 연구 참여자의 구성 요소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정착과정 심리·정서적 요인’의 3개의 구성 요소로 나타났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에서는 3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로 정리하였다. 범주로는 ‘탈북동기’, ‘탈북 후 중국에서의 삶’,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범주에 따른 하위범주는 ‘중국에 대한 호기심’, ‘속임수에 넘어감’, ‘생활고로 인한 자발적 동기’, ‘인신매매와 강제 혼인에 의한 인권침해’,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힘’, ‘생존권 인권침해’, ‘무국적자의 삶’, ‘북송에서 재탈북’, ‘국적 없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은 1개의 범주와 3개의 하위범주로 정리하였다. 범주는 ‘차별과 배제’로 나타났고 하위범주는 ‘민족적 이념에 따른 배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방인 취급’, ‘임금 격차로 인한 차별과 배제’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 정착과정 심리·정서적 요인 구성 요소에서는 3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지역적 배제’, ‘심리·정서’, ‘삶의 가치 기준’,이며 하위범주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자아’, ‘대인기피증’, ‘삶을 포기’, ‘삶의 기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3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7개의 범주와 19개의 하위범주 및 내용을 제시한 [표-8]은 다음과 같다.

[표-8]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 관련 경험 구성요소

구성요소 1-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

범 주	하위범주	내 용
탈북 동기	중국에 대한 호기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교들과 거래함 북한에 없는 원단사려 중국에 감
	속임수에 넘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장사해 돈을 벌수 있다고 해서 중국에 가면 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중국에 가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중국에서 돈을 벌면 엄마 약을 살 수 있다고 해
	생활고로 인한 자발적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을 가기 위한 자발적 선택
탈북 후 중국에서 의 삶	인신매매와 강제혼인에 의한 인권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건을 사려 사장에 간다하고 팔려 다님 조선족의 도움으로 인신매매단에서 벗어남 싫다고 함 도망쳐 나옴 또다시 팔려 감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이 없음, 감시 인신매매로 팔려 감
	생존권 인권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안에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하려고 함 중국에 빨을 불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차피 팔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무국적자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에 7번에서 10번까지 공안에 잡혀감 여자 한 명을 놓고 형제끼리 싸운다. 납치당함 협박, 불안 내 아이를 가졌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낙태

	북송에서 재 탈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송 후 엄마 모시고 다시 중국으로 재 탈북 • 북한 가족이 내 호적을 없애 집결소에서 나와 바로 탈북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	국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 졸이면서 사는 게 싫어서 • 보호 없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 무시당함 • 숨어 다녀야 함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산다고 하여 •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선택

구성요소 2-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

범 주	하위범주	내 용
차별과 배제	민족적 이념에 따른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함 사건 • 깔보고 • 빨갱이 • 다르게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방인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족보다 못한 외국인 취급을 당함 • 남의 땅 • 세금을 뜯어먹는 • 수모 • 2등 국민
	임금 격차로 인한 차별과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무니없이 낮은 월급 • 면접 볼 때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게 더 편 함 • 자존심 • 벼룩시장

구성요소 3-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 정착과정 심리·정서적 요인

범 주	하위범주	내 용
지역적 배제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동공단이 있어 외국인이나 조선족들이 많다.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해줌
심리·정서	자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대인기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 편견으로 인한 우울증

삶의 가치 기준	삶을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걸 내려놓고 산다.• 사람이 적은 시골에서 살고 싶다.
	삶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의 기준을 낮추어라• 마인드• 당당함• 가족의 힘

제2절 주요범주들에 대한 기술분석

1) 연구 참여자의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에서는 3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로 정리하였다. 범주로는 ‘탈북동기’, ‘탈북 후 중국에서의 삶’,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범주에 따른 하위범주는 ‘중국에 대한 호기심’, ‘속임수에 넘어감’, ‘생활고로 인한 자발적 동기’, ‘인신매매와 강제 혼인에 의한 인권침해’,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힘’, ‘생존권 인권침해’, ‘무국적자의 삶’, ‘북송에서 재탈북’, ‘국적 없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의 범주와 하위범주 내용을 [표-9]로 정리하였다.

[표-9] 구성요소 1-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

범 주	하위범주	내 용
탈북 동기	중국에 대한 호기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교들과 거래함· 북한에 없는 원단사려 중국에 감
	속임수에 넘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장사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중국에 가면 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중국에 가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중국에서 돈을 벌면 엄마 약을 살 수 있다고 해
	생활고로 인한 자발적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을 가기 위한 자발적 선택

탈북 후 중국에서 의 삶	인신매매와 강제 혼인에 의한 인권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을 사려 사장에 간다하고 팔려 다님 • 조선족의 도움으로 인신매매단에서 벗어남 • 싫다고 함 • 도망쳐 나옴 • 또다시 팔려감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이 없음, • 감시 • 인신매매로 팔려 감
	생존권 인권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안에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 성추행하려고 함 • 중국에 밭을 불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 어차피 팔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 •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무국적자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7번에서 10번까지 공안에 잡혀감 • 여자 한 명을 놓고 형제끼리 싸운다. • 납치당함 • 협박, 불안 • 내 아이를 가졌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낙태
	북송에서 재 탈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송 후 엄마 모시고 다시 중국으로 재 탈북 • 북한 가족이 내 호적을 없애 집결소에서 나와 바로 탈북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	국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 졸이면서 사는게 싫어서 • 보호 없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 무시당함 • 숨어 다녀야 함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한다고 하여 •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선택

(1) 탈북동기

① 중국에 대한 호기심

참여자는 북한에 있을 때 옷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화교들과 거래하면서 북한에 없는 원단이 중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누구의 소개도 없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 팔려 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가 탈북할 당시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물질의 부족으로 돈을 주고도 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 가면 북한에서 구매할 수 없는 상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 동기는 북한에 있을 때 화교⁹⁾들하고 장사를 하다 보니 중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에 없는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옷하고 그랬으니까 원단을 좀 사려고 넘어갔어요. 그때는 중국으로 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허리에다 북한 돈을 차고 무턱대고 건너갔다가 다시 오면 되는 줄 알았지,"(연구 참여자I)

② 속임수에 넘어감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참가자들은 대부분 북한의 생활고로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속임수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자신이 팔려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난은 고도에 달하면서

9)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해외에 정착하여 경제 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유기적 연관을 유지하는 중국인 또는 그 자손을 말한다(네이버 : 용어사전).

북한 여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중국에 가면 장사밑천을 마련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으로 가지만 말도 모르는 남의 나라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어 브로커들의 소개로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 혼인을 하는 등 인권침해 관련 경험을 하게 된다.

“아는 사람을 통해 중국에서 장사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여자 3명 중국에 넘어오자 초가집 같은데 우리를 방에 가두었다. 그런데 다른 방에 3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 여자들과 분리하여 가두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안방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팔려 갔다가 도망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우리를 팔아먹어야 하는데 들통날까 봐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다.”(연구 참여자2)

“어떤 분을 만나서 중국에 가면 둑 돈을 벌어와서 가져오면 너는 장사를 잘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넘어갔죠! 오직 돈을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를 팔아먹는다. 팔아먹겠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잡히지 말아야겠다 오직 그 한 가지 생각만 하였다.”(연구 참여자3)

“내가 24살 때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져누워 앓으셔 우리 집 형편이 매우 어려울 때, 같은 공장에 일하는 아줌마가 내 사정을 알고 중국에 가면 벼농사, 모내기 한 달만 일해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중국 가서 돈 벌어와서 엄마 치료해주면 어떻겠냐고 하였다. 공장에는 엄마 약 구하러 간다고 편지 써 놓고 도강하였다.”(연구 참여자4)

③ 생활고로 인한 자발적 동기

연구 참여자는 북한에서 경제적 곤란으로 힘든 삶을 살면서 한국에 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중국에 발을 붙이기 위해 사진하여 스스로 팔려 갔다. 북한의 지긋지긋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하여 중국으로 간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이민자로 인정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기 위해 한국을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나는 팔려 가는 거 알았지, 알고 팔려 갔다. 일단은 첫째 넘을 때부터 남한을 가야지 목적하고 넘었으니까 일단은 선을 못 잡으니까 팔려 가야지, 말을 알아야 하고 길을 알아야 한국을 갈 수 있다. 처음에는 팔려 가고 두 번째는 계획하고 넘어갔다.”(연구 참여자5)

(2) 탈북 후 중국에서의 삶

① 인신매매와 강제 혼인에 의한 인권침해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중국으로 넘어간 순간부터 인신매매 브로커들에게 자신이 팔려 다니는 줄도 모르고 팔려 다녔다. 또 중국의 무진장한 상품에 대한 호기심에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단이 북한 여성임을 알고 자신을 팔려 다녔지만, 자신이 팔려 다닌다는 걸 전혀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좋은 사람의 도움으로 인신매매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등의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자신들이 의도치 않았던 인신매매로 강제 혼인을 하게 된다.

“나는 북한에서 옷을 만들고 그래서 원단이랑 부자재 사고 싶어서 왔다고 하다고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주인이 언제쯤 시장에 데리고 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자기네 친척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 나를 데리고 갔다. 나는 시장을 가는 줄 알고 차에 실려 갔다. 시골에 있는 큰 집에 들어가니 북한 여자들이 4명 정도 있었다. 그런데 머무르고 있는 집주인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너를 팔려 다닌다.’ 하면서 여기 (포틀이)들이 많아 여자 없는 사람에게 판다고 하였다. 그 대상자가 70대가 될지 20대가 될지 그 범위가 넓다고 하였다. 집주인이 중국 돈 200원을 주는 거야, 모자랄 수는 있는데, 하면서 다른 집에 피신시켜주었다.”(연구 참여자1)

“한 사람만 남기고 우리를 데리고 중국(청왕도)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남자를 만나게 하고 좋으면 동그라미 숫으면 엑스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저는 다 숫다고 해서 저 혼자만 남고 2명은 팔려 갔다. 다음 날 아침 이놈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간곳은 동서남북 다 산이야, 내가 팔려 간 집 아들이 군대에 나가 다쳐서(남자구실을 못 하는) 약을 먹으면서 치료 중인데 여자가 있으면 빨리 회복된다고 해서 나를 사 왔다고 하더라고. 인신매매 브로커에게 어차피 도망 못 가고 여기서 살 거면, 다른 남자와 살겠다. 대신 나한테 돈을 달라! 당신들 또 나를 팔거 아니냐? 그러니 그 돈을 절반 달라고 했다. 그 돈 절반을 북한에 보내주기로 하고 6월 1일 도망 나와 지금 아기 아빠에게 다시 팔려 갔다.”(연구 참여자2)

“다음에 어데 또 데려가는 거야, (싼동)지역에 가서 어떤 남자 하나 선보이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이 남자 말동무하면서 이 집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게 하는가 보다. 단순하게 생각했지, 여기 있다

가 여기서 좀 돈을 벌다가 데리러 오겠다고 하였으니. 일을 뭐 열심히 한 거지 거기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나중에야 내가 팔려 온 걸 알게 되었다.”(연구 참여자3)

②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힘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중국에서 돈을 벌어 장사밑천을 마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인신매매로 팔려 가고, 팔려 가서도 감시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모르니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 돈 벌어 택시 타고 뭐라도 타고 하면 북한으로 국경까지 가야겠다. 이러고 근데 말이 안 되니까,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당시 두 달이 되어오니까 나 이제 북한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생각밖에는 못 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 이 넓은 땅에서 말이 통해야 어디든 가지, 일단 돈부터 벌고 말부터 배우자, 나를 데리고 간 조선족 여자 사돈이 시집을 가면 안 되겠냐고 6개월 이던, 1년이던 돈을 모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라고 하였다.”(연구 참여자1)

“앓는 엄마를 살리는 게 목적이니 엄마를 살리고 보자고 견뎠는데 이삼일 있다가 보니 하는 얘기가 다시 돌아가기 어렵대요. 돌아가겠으면 혼자 가래, 그리고 데려다준 여자는 벌써 갔대. 어머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런 사기를 당한 기분, 그래 이제는 뭐 현실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연구 참여자4)

③ 생존권 인권침해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말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 살기 위해 스스로 남자를 선택하였다. 중국에 간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인신매매단이 소개한 남자에게 팔려 갈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기에는 인신매매단의 성추행까지 하려고 하였다. 또 어차피 팔려 가게 되니 도망쳐 다시 팔 거면 절반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 달라고 하였다. 또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팔려 가서라도 자리를 잡고 한국에 오는 길을 모색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인인매매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으로 팔려 간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돈 주고 사 왔기 때문에, 물건 취급을 당하였고, 사촌 형제가 한 여자를 놓고 서로 눈독을 들이고 도망쳐 나와서도 또다시 팔려 가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팔려 간 곳은 심심산골 농촌 마을로 팔려 갔으며, 팔려 가서도 도망칠까 봐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아무런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거기에는 공안에 잡혀 북송될 걱정 때문에 한시도 마음 놓고 생활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돈부터 벌고 말부터 배우자, 그런데 일자리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하니까 주인집 사돈이 그려더라고 남자가 있는데 똑똑하고 그런데 조금 장애인이긴 한데 말이 장애인이지, 거기 가서 말도 좀 배우고 같이 있어봐라. 있다가 돈 벌면 가던가, 아니면 같이 살아도 손해는 없을 거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갔지, 나는 팔려 다닌다는 걸 몰랐을 그 한 달에 대한 격분과 분노가 있다.”(연구 참여자1)

“저는 다 쉽다고 해서 혼자만 남고 2명을 팔려 갔다. 그러다 보니

혼자 남게 되었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 한족 인신매매단 놈이 들어왔다. 그런데 간단한 조선말을 하는데. 이놈이 저녁에 들어와 같이 자자 하더라. 예감이 이상해 미리 서랍에서 불펜을 찾아, 가지고 있다가 너 나한테 오면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하니 잠깐만 하더니 전화를 바닥에 쭉~ 밀어주면서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전화를 받아보니 북한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 그랬더니 이놈이 자라고 하더니 자기는 나갔다.”(연구 참여자2)

“일단 여기(중국)까지 왔으니 여기는 잘 산다. 그런데 안전 하자면 팔려 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 사람이 그렇잖아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되는 노릇이거든”(연구 참여자3)

“이제는 현실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면 그 집에 가서 살면서 돈도 모아서 집에 보내고 너도 거기(북한) 가서 살기보다 중국에서 사는 게 편할 거다. 근데 중국에 와서 보니 북한하고 너무 차이가 나오고, 북한은 그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차라리 빨리 보내 달라고 했어요. 빨리 보낸다는 게 한 달 후에 남자를 찾아서 보냈죠”(연구 참여자4)

“나는 팔려 가는 거 알았다. 일단은 첫째 넘을 때부터 남한을 가야지 목적하고 넘었으니까, 일단은 선을 못 잡으니까 팔려 가야지, 말을 알아야, 길을 알아야, 한국을 갈 수 있다. 나는 알고 팔려 갔다.”(연구 참여자5)

④ 무국적자의 삶

연구 참여자는 중국에서 국적 없이 살면서 중국 공안에 1년에 7번에서 10번까지 잡혀가 갔다가 공안에 돈을 주고 나오기도 한다. 또 팔려 갔다가 도망쳐 나와 다른데 다시 팔려 가서 살다가 임산부 상태에서 처음에 팔려 간 남자에 의해 납치되어 남의 집에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낳은 아이도 돈이 없어 호적도 없이 살아간다. 다른 연구 참여자는 아이를 가졌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아이를 낙태하여야만 한다.

“7번 잡힌 거는 중국에 간 3년 지난 시점이다. 지금 생각하면 1998년도 그때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그때부터 알았다. 공안에 잡히면 시아버지가 돈 주고 꺼내오고, 1년에 최소 7번 잡혀가고 많이 잡혀가면 12번도 잡혀갔다. 근데 돈 있고 하니 그렇게 괴롭힘 받지 않고 탈북자냐? 아니냐? 물어보고 내보냈다. 그렇게 2009년 까지 살다가 또 잡혀갔다. 그때 나는 중국에 18년 19년 살았을 때 집에 가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탈북자들이 잡혀갔다. 다시 오고 그러니까 나도 북한에 가 보고 싶어서 북한사람이라고 말하고 북송됐지”(연구 참여자1)

“나를 소개해 판 여자한테서 전화가 와 처음에 팔려 간 사람이 나를 찾으면 다시 살겠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판 여자가 나를 보고 가겠다고 전화와 약속장소로 가니 차가 있었다. 그런데 원 남자 2명이 갑자기 나타나 나를 농구반(승합차)에 쳐넣는 것이다. 내가 임신한 상태이니 막대하지는 못하고, 처음에 팔려 갔던 남자가 나를 납치했다. 이 아이가 너 아이가 아니라 고 소리 지르고 발악한다고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개 쇠 사슬 같은 걸 대들보에 끓어놓고 너를 도망가지 못하게 끓어놓겠

다고 위협하였다. 결국은 다시 잡혀들어가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면서 나를 감시하였다. 내가 계속 발악하니 너를 저수지에 던지면 고기밥이 된다고, 귀신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고 협박하였다. 중국은 형제도 못 믿어, 4촌 형이 나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중국은 여자 하나를 놓고 형제끼리도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연구 참여자2)

“한족 남편을 만나고 어~금방 애는 가졌는데, 한족들은 의심이 많더라고! 예를 들어 브로커들이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지지 않았는가 해서 맨 처음에 애를 없애라는 거야, 그때 당시 애를 지우는 게 그런 의도에서 없애라고 하는지 생각도 못 한 거야, 그 집에 손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애를 하나밖에 못 낳는다. 이런 거로 해서 나를 얼려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참 그게 또 섭섭하더라고, 내 생명인데 어찌 보면, 내 의사와 아예 관계없이. 시엄마도 거기에 동반시키고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족쇄로 끓어 간다고 흉내를 내면서. 나한테도 그때 일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거는 잊혀지지 않을 거 같아요.”(연구 참여자3)

⑤ 북송에서 재탈북

중국에서 살던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북송되지만, 가족에게 반동분자 취급을 당하고, 또 중국으로 간 자식 문제로 북한에 남은 자식들의 앞날에 해가 될까 봐 중국에 살아있는 자식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호적에서 아예 삭제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1년 동안 집결소 생활하면서 중국에서 잡혀간 여성 탈북자들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1년 만에 집결소에서 풀려나오자 바로

중국으로 왔다고 한다. 또 이들은 비록 중국에서 숨어서 살아야 하지만, 북한의 생활보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더 났기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 재탈북을 한다. 특히 중국에 탈북하여 하루라도 살아본 사람은 두 번 다시 북한에서 살지 않으려고 모진 고문과 총구를 등에 지고 목숨 걸고 사선을 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북송됐는데 중국에 너무 일찍이 나와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 우리 집에서 내 호구를 죽은 사람으로 다 지워버린 거야, 그다음에 중국에서 돈을 보낸 거로 집이랑 옮긴 거야, 그 주소를 내가 모르고 있으니 10년 전에 살던 집 주소를 대니까 없어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1년을 북한집결소에 있었다. 집결소에서 나오자 바로 또 중국으로 왔지, 내 밭로 왔지, 중국은 그 집을 목표로 하고 건너왔다.”(연구 참여자1)¹⁰⁾

“1998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에 와 2000년도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잡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북한에 가고 싶어서 차라리 잘 됐다. 이때 가자, 겁 없죠! 나도 북한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해 (도문)에서 잡혀 온성으로 넘겨서 엄마한테까지 가는 게 26일 정도 걸렸어요. 온성보위부, (단련대)에 중국에서 잡혀 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치치 곤란으로 집에 보내주었다. 집에 가서 엄마랑 잘 살라고, 너무 좋아 집에 가서 엄마 불들고 좋아서 그러다가 엄마보고 중국에 같이 가자고 하니 안 간대, 아들도 군대 갔다 와 엄마가 있어야지 어떻게 가겠냐 했는데, 그런데 엄마와 같이 살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나보고 반동분자, 반동분자라 그래 싸우다가 도망친 거예요. 엄마 모시고 같이 중국에 왔다.”(연구 참여자4)

10) ※ (연구 참여자1)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잡혀간 탈북 여성들이 북한에서 당한 처참한 인권 상황에 대한 내용은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3)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

① 국적없음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 온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국적이 없어 무시당하고, 공안에 잡혀 북송될까 봐 숨어 살면서 언제나 마음졸이며 살고 있었다. 이들은 북송되면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대우를 받으면서도 숨을 죽이고 살아야 하고 숨어 살아야 했다. 중국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이민자로도 인정해주지 않아 다시 북송되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또다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행을 선택한다.

“북한에서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 본래 살던 동네를 떠나야 했다. 북송되어 가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1년 동안 겪어도 보고.... 내가 느낀 것보다 실물로 본게 더 많으니까(한숨), 다시 잡혀갈 수 없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은 잡혀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올 때 한국행을 선택한 거지,”(연구 참여자1)

“교회에서 조선족 성도를 만나 생활했지, 집을 잡고 살면서 경찰들이 수시로 나타나면 숨어야 하고, 탈북자들은 보호 없이 인정을 해 주지 않으니”(연구 참여자3)

“바깥출입을 아예 금했고, 동네 언니네 집에 가도 시 엄마가 뒤따라 오더라고, 그게 눈꼴사나워 시 엄마에게 뭐라 했다고 그 집 사위가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고 뭐라 알아듣지 못할 욕을 하는 거야,

중국에서 살 때 밤에 불빛이 비치면 잠을 못 잤어요. 또 잡혀 나갈까 봐, 불빛이 비치면 공안차 오는 줄 알고 불안해서, 남편에게 공안이 오면 먼저 문부터 열지 말고 나를 먼저 빠져나간 다음에 문을 열어주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집에서 쉽게 넘을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연구 참여자5)

②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연구 참여자는 도망과 납치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돈이 없어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지 않기 위하여 한국행을 선택하였으며, 돈이 없어 팔려 다니던 자신이 한국에 오면 돈을 벌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한국행을 선택 하였다고 하였다.

“처음에 팔려 간 그놈이 찾아올까 봐 양을 치는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기구하게 태어났고 더는 중국에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한국에 가겠다고 남편을 설득하여 내가 먼저 한국에 오고 나중에 아이와 남편을 데리고 왔다. 첫째도, 둘째도, 한국에 오면 돈을 벌어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국 남편이 너무 못살아 아이를 호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나도 계속 피해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으니 한국에 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먼저 한국에 온 언니가 한국에 오면 돈을 벌 수 있고 국적도 가질 수 있다고 하여 한국행을 결심하였다.”(연구 참여자2)

2) 연구 참여자의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은 1개의 범주와 3개의 하위범주로 정리하였다. 범주는 ‘차별과 배제’로 나타났으며, 범주에 따른 하위범주는 ‘민족적 이념에 따른 배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방인 취급’, ‘임금 격차로 인한 차별과 배제’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의 범주와 하위 범주 내용을 [표-10]으로 정리하였다.

[표-10] 구성요소2-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

범 주	하위범주	내 용
차별과 배제	민족적 이념에 따른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함 사건 · 깔보고 · 빨갱이 · 다르게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방인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족보다 못한 외국인 취급을 당함 · 남의 땅 · 세금을 뜯어먹는 · 수모 · 2등 국민
	임금 격차로 인한 차별과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무니없이 낮은 월급 · 면접 볼 때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게 더 편함 · 자존심 · 벼룩시장

(1) 차별과 배제

① 민족적 이념에 따른 배제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의 차별 못지않게 한국에서 또 다른 차별과 배제로 인한 인권침해에 노출된다. 남북 간의 사건이 터져도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같이 살고 있는 연인에게서도 ‘빨갱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2등 국민 취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라고 사장이란 사람도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였다. 한국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북한에서 왔을 뿐이지 외국인 노동자나 뭐가 틀리는 게 있냐? 대놓고 말한다.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면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도 나에게 (이게 사람이냐?), (국민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물어보니 시선이 나한테 집중된다. 나는 ‘천안함 사건’에 내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미 나는 한국에 와 있었으니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겠다 하였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북한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해 왔고, 그런 요소요소 하나가 자존심이 상하였다.”(연구 참여자1)

“남편이 인력사무소에 등록하고 일하러 다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한달 수입을 800만 원으로 부정 신고되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그것 때문에 집이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하였다. 남편은 중국 사람이고 나는 탈북자라고 깔보고 그런 짓을 한 거 같다. 식당에서 일할 때도 북한에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와서 저런다고 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났다.”(연구 참여자2)

“식당에서 일할 때 북한에서 온 걸 숨기고 싶은데 손님들이 말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한두 마디라도 하면 말투 때문에 북한사람이라는 게 알려진다. 그러면 손님들은 ‘장백산에 갔다 왔다’ 아니면 ‘북한에도 하이힐이 있나?’하고 관심 가지고 물어보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 한국에 와서 언어 때문에 북한사람이라고 상처를 받는 게 제일 힘이 들었다.”(연구 참여자3)

“친구의 고향이 ‘개성’ 이여서 말투가 별로 티나지 않는데도 주변에서 말투가 이상하다고 하여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는데, 가깝게 지내는 한국 친구가 굳이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라고, 북한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말에 친구는 너무 상처를 받아 아이들이 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받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못 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연구 참여자4)

“아는 사람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을 때 보이지 않던 문제가 같이 살면서 매일 술과 담배를 피우면서 잦은 싸우게 되니 나를 ‘빨갱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 땅에서 빨갱이 소리 듣기 쉽고 그 땅에서 태어난 게 쉽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빨갱이’라는 말이 들으니, 너무 분하여 ‘너는 괴뢰군××냐?’고 싸우면서 경찰서에 몇 번을 신고하여 조사받았다.”(연구 참여자5)

“회사에서 제일 나이 어리기도 하여 원단 나르고 일손도 빠르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면 다 했다. 사장이 청찬하니 나이 어린 게 들어와 사장한테 꼬리친다고, 또 탈북자가 왔으면 나라에서 돈 주고다 먹여 살려주는데 집구석에 앉아 놀지 뭐하러 나와서 남의 임금을 착취해가냐?, 그 말에 너무 격분하여 심하게 싸웠다. 결국은 벌금이 나오고 나만 손해 보게 되었으며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되

었다.”(연구 참여자1)

②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방인 취급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주고 국적을 주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외국인이나,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나라 세금만 축낸다고 인식하여 그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

“친구가 한국 여자와 싸우는데 한국 여자가 하는 말이 ‘북한×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왜 남의 땅에 와 우리를 못 살게 하냐? 우리 세금을 뜯어먹는 거냐?’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조선사람이고, 내 땅이고, 내 땅에 왔는데 어디를 가라는 가고 말하면서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이였다. 뭘 일이 생기면 북한사람이라고 못 박아 말하는 게 너무 싫었다.”(연구 참여자2)

“한국에서 인간의 권리인 신분증도 주고 하지만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다. 탈북자라는 말속에는 너네는 일원도 없이 온 주제에 하는 인식이 배겨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차별하지 않는데 탈북자라 하면 못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남한 주민들의 시선은 북한이탈주민들을 2등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다.”(연구 참여자3)

③ 임금 격차로 인한 차별과 배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려고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급여와 차별과 편견으로 자신감이 낮아져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하여 한달에 12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취업했는데 80만 원이니까 기분이 상했지만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일을 잘하면 월급을 올려주겠지 하고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였다. 3개월 지나 급여가 10만 원 올려주었다. 6개월 지나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니 못 올려준다고 하여, 나는 이 급여로 월세도 내야 하니 생활할 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하니 나라에서 집을 준거 아니냐고 하였다.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식비 포함해서 급여가 18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6개월 만에 100만 원 더 올랐다. 나에게 줄 수 있는 급여가 180만원 이였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편견으로 터무니없는 낮은 임금을 준 것이다.”(연구 참여자1)

“면접 볼 때 차라리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는 게 더 어렵고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게 더 편해요. 학원 다닐 때도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연구 참여자2)

“일자리 때문에 벼룩시장 신문을 가져다 전화로 문의해보면 억양 때문에 탈북자인가요? 교포인가요? 하는 질문할 때면 속이 뜨끔하면서 자손심이 상하였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교포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데만 전화하였다.”(연구 참여자3)

3)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정착과정 심리·정서적 요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정착과정 심리·정서적 요인 구성 요소에는 3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지역별 특성’, ‘심리·정서’, ‘삶의 가치 기준’,이며 하위범주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자아’, ‘대인기피증’, ‘삶을 포기’, ‘삶의 기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정착과정 심리·정서적 요인의 범주와 하위범주 내용을 [표-11]로 정리하였다.

[표-11] 구성요소3-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정착과정 심리·정서적 요인

범 주	하위범주	내 용
지역별 특성	인천광역시	· 남동공단이 있어 외국인이나 조선족들이 많다.
	강원도	· 잘해줌
심리·정서적 요인	자아	· 자아존중감
	대인기피증	· 자살 · 편견으로 인한 우울증
삶의 가치 기준	삶을 포기	· 모든 걸 내려놓고 산다. · 사람이 적은 시골에서 살고 싶다.
	삶의 기준	· 행복의 기준을 낮추어라 · 마인드 · 당당함 · 가족의 힘

(1) 지역별 특성

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 남동공단을 비롯한 공단들이 있어 외국인이나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나마도 말이 통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일자리가 많기에 전화를 많이 하였다. 인천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많이 있고, 해외 동남아나 베트남 사람들도 많다. 외국인은 말이 잘 못 하지만, 조선족이랑 우리는 억양 때문에 그러지 말은 잘할 수 있으니 조선족인가? 아니면 탈북자 이렇게 물어본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으면서 일하였다.”(연구 참여자3)

② 강원도

강원도는 북한과 가까운 지역으로 말투도 북한과 비슷하여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을 잘 대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하나원에서 나와 집을 강원도 춘천에 받았어요. 춘천에서 김밥집에서 좀 일하고, 다른 데서도 일하면서도 재미있게 일하였다. 어데 가도 북한사람이라고 하면 잘 대해주고, 언니들도 그냥 재미있게 잘 지냈어요. 2007년에 강원도 춘천에 왔을 때 직업훈련 학교나 학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연구 참여자4)

(2) 심리·정서적 특성

① 자아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주변의 시선을 무시하고 잘 이겨내는 방면,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출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도 있었다.

“제 친구는 자식이 13살인데도 북한에서 자신이 왔다는 이야기를 못 한대요.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위축되거나, 우리 엄마는 북한사람이라는 차이를 생각할까 봐. 저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기죽지 않고 당당해요.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르죠! 친구는 내성적이고 마음이 약하고 나는 좀 자아가 강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연구 참여자4)

“처음에는 북한말투 때문에 차별받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바꾸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리고 다시 중국에 다시 가고 싶다 하고 안되면 자살하려고 하는 게 제일 안타깝다. 행복의 기준을 낮추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에 대해 빨리 받아들이면 북한에서 살 때보다 잘 살 수 있다. 본인이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는가에 따라 헤쳐나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 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연구 참여자3)

② 대인기피증

북한이 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 참지 못하고 폭행하여 벌금과 함께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 일로 다른 회사에도 취업이 어려워지는 것도 북한이 탈주민이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다가와 대인기피증으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또 연인으로부터 ‘빨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정폭력까지 당하면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데 대한 좌절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을 잘한다고 사장이 칭찬하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나이가 어린 게 들어와 사장한테 꼬리 친다면서 탈북자가 왔으면 나라에서 돈 주고 다 먹여 살려주는데 집구석에 앉아 놀지 뭐하려 나와서 남의 임금을 착취해가냐? 그 말에 너무 격분하여 먼저 폭행하였다. 이 일로 경찰서에 신고되어 조사받게 되었고, 싸움은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폭행은 먼저 했다고 인정하였다. 그 문제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와 담당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80만 원 벌금을 내고 마무리되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다른 봉제 공장에 취업하려고 하니 이미 소문이 나버려 다른 공장에 갈 수 없었다. 그때부터 사람이 쉽고 수급자로 넘어가면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대인기피증으로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게 쉽다.”(연구 참여자1)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몇 번의 신고했지만, 경찰서에 가면 경찰들 앞에서 ‘풀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는 줄 아냐?’ ‘이 빨갱이×아! 니편 들어줄 거 같애?’하고 경찰들은 부부싸움은 부부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나는 탈북자여서 진짜 팔이 안으로 굽는다~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흔해 달라고 하면 때리면서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이, 빨갱이×
이 마음대로 이흔하자고 한다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살았지만, 누구
도 해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 형제도 없으니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았다. 말이
통하고 같은 민족에게 받은 모욕적인 말이 가슴에 비수가 꽂혀 더
큰 상처로 남는다.”(연구 참여자5)

(3) 삶의 가치 기준

① 삶을 포기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장착과정에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남한 주민
들이 스치듯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흥기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상
처가 남는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로
남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상처가
되고, 가슴에 맺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가 잘못해서 살겠다고 탈북해서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중국에서는 숨어서 살아야 하고, 한국에 와서는 당당하게 국적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 상황, 그것도 단지 북한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그냥 손해 보는 쪽으로 모든 거를 내려놓고 있
다.”(연구 참여자1)

“한국에서의 차별은 말 한마디가 너무 야멸차다. 흥기를 휘두르지
않지만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된다. 너네는 못 먹고, 못 살아서 한국
으로 왔다. 이런 말들이 사람 뼈를 각는다. 중국에서는 말은 몰라

도 옆집과 소통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소통이 안 되고 더 가슴에 남는다.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가고 싶다. 한국국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여서 그런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남의 아픔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줄 모른다. 오직 자신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벌어서 먹고살고 우리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북한사람이라는 차별이.... 스치듯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 중국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뭐라 말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한국에서는 대화가 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더 가슴에 맷혀요.”

(연구 참여자2)

② 삶의 기준

한국에 오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왔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는 방면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을 더 각성시키고 행복의 기준을 낮추고 한국 사회에 대해 빨리 이해하는 것이 빠른 정착의 길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한다고 하였다. 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았다. 대인기피증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연구 참여자 1)은 ‘독신 가정’ 이였고, 다시 중국으로 가고 싶고 사람이 적은 시골로 가고 싶다고 한 (연구 참여자 2)는 ‘다문화가정’ 이였다. 현재 한국에 잘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3)은 배우자가 조선족이였고, (연구 참여자 4, 5)는 배우자가 남한사람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였다.

“일자리를 찾아 해매고 있어도 그것을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없

다. 내 선입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편견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외국인 취급한다. 그냥 손해 보는 쪽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다. 사람이 쉽고 누구도 만나기 쉽다.”(연구 참여자1)

“딴 데로 가고파요. 산골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아니면 중국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도 한다.”(연구 참여자2)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오히려 나를 더 각성하게 만드는 것 같다. 말투, 직설적인 성격을 바꾸어 나가면서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자신을 각성하게 한다. 나는 행복의 기준을 낮추고 자신을 준비해 가고 있다. 본인이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헤쳐나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였다.”(연구 참여자3)

“심리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었으면, 나 정도면 어디 가서 당당하게 다른 직업을 도전하겠는데라는 생각은 있다. 그 사람 자체를 놓고 평가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왔으니 너는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저는 어디 가나 당당하다.”(연구 참여자4)

“한국정착 10년 넘었는데 5년은 나쁜 놈 만나 죽지 못해 살았지만, 지금은 가족들 때문에 버티고 있다. 토끼 같은 내 새끼들이 웃고 떠들고 재롱부리는 거 보면 힘이 나고 또 남편이 많이 힘이 된다. 가족이 힘이다.”(연구 참여자5)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중국과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은 무엇인지, 또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이 사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중국에 체류한 경험을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0년 이상 정착 경험한 5명의 서울, 경기 북한이탈주민 여성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정착 과정 심리·정서적 요인’의 3개의 구성 요소로 나타냈다.

제1절. 연구요약 및 논의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3개의 구성 요소와 8개의 범주, 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에서는 3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로 정리하였다. 범주로는 ‘탈북동기’, ‘탈북 후 중국에서의 삶’,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로 정리하였다. 범주에 따른 하위범주는 ‘중국에 대한 호기심’, ‘속임수에 넘어감’, ‘생활 고로 인한 자발적 동기’, ‘인신매매와 강제 혼인에 의한 인권침해’,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힘’, ‘생존권 인권침해’, ‘무국적자의 삶’, ‘북송에서 재탈북’, ‘국적 없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등 10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대부분 북한의 생활고로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는 속임수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인신매매를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북한에 있을 때 옷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화교들과 거래하면서 북한에 없는 원단이 중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단이 북한 여성임을 알아차린 인신매매단에 의해 자신이 팔려 다녔지만, 정작 자신은 팔려 다닌다는 걸 전혀 모르고 따라다녔다가 좋은 사람의 도움으로 인신매매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등의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 국적 없이 살면서 중국 공안에 1년 동안 7번에서 10번까지 잡혀가 갔다가 공안에 돈을 주고 나오기도 한다. 또 팔려 갔다가 도망쳐 나와 다시 한족 남자에게 팔려 가 살면서 임신한 상태에서 처음에 팔려 간 남자에 의해 납치되어 남의 집에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낳은 아이도 돈이 없어 호적도 없이 살아간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팔려 가서도 도망칠까 봐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고 아무런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거기에는 공안에 잡혀 북송될 불안과 걱정으로 한시도 마음 놓고 생활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했다. 중국에서 살던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북송되지만, 가족에게 반동분자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또 중국으로 간 자식 문제로 북한에 남은 자식들의 앞날에 해가 될까 봐 중국에 살아있는 자식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호적에서 아예 삭제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1년 동안 집결소 생활하면서 중국에서 잡혀 온 여성 탈북자들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1년 동안 목격하면서 집결소에서 풀려나오자 바로 중국으로 왔다고 한다. 또 이들은 비록 중국에서 숨어서 살아야 하지만, 북한의 생활보다 중국에서 생활이 더 났기 때문에 또다시 중국으로 온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한 나라 한 민족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한국으로 오게 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은 1개의 범주와 3개의 하위범주로 정리하였다. 범주는 ‘차별과 배제’로 분석하였고, 하위범주는 ‘민족적 이념에 따른 배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방인 취급’, ‘임금 격차로 인한 차별과 배제’로 구분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중국에서의 차별 못지않게 한국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었다. 남북 간의 사건이 터져도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같이 살고 있는 연인에게서도 ‘빨갱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2등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주고 국적을 주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외국인이나,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 남한주민들이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나라 세금만 축낸다고 인식하여 그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낮은 급여의 격차로 자신감이 떨어져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정착과정 심리·정서적 요인 구성 요소에는 3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다. ‘지역별 특성’, ‘심리·정서적 특성’, ‘삶의 가치 기준’,이며 하위범주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자아’, ‘대인기피증’, ‘삶을 포기’, ‘삶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인천광역시에는 남동공단을 비롯한 공단들이 많이 있어 외국인이나 중국 조선족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수위가 낮아 다른 지역 연구 참여자보다 인권침해 체감도가 낮아 보였고 북한과 가까이 지역인 강원도 춘천은 북한에서 왔다고 오히려 더 잘 대해주어 동질감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참여자의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차별과 편견을 받아들이는 대상자가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는가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는 방면, 북한이탈주민을 다르게 본다

는 말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례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 울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으로 이어져 결국 벌금과 함께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 일로 같은 업종 다른 회사에도 소문이 돌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더 혹독하게 다가오면서 대인기피증으로 사람을 만나기 싫다고 하였다. 또 연인으로부터 ‘빨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정폭력까지 당하면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데 대한 좌절로 자살까지 생각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장착과정에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남한 주민들이 스치듯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흥기에 맞은 상처보다 더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고 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언어를 쓰며 소통할 수 있는 한나라 한민족이라고 믿고 한국으로 왔으나 민족적 이념에 따른 배제,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하였다.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나라에서 집과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차별과 편견으로 삶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적은 시골이나 다시 중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왔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물지각한 사람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는 방면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을 더 각성시키고 행복의 기준을 낮추고 한국 사회에 대해 빨리 이해하는 것이 빠르게 정착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한다고 하였다. 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았다. 대인기피증으로 제일 힘들어 하는 (연구 참여자1)은 ‘독신 가정’ 이였고, 다시 중국으로 가고 싶고 사람이 적은 시골로 가고 싶다고 한 (연구 참여자 2)는 ‘다문화가정’ 이였다. 현재 한국에 잘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3)은 배우자가 조선족이였고, (연구 참여자 4, 5)는 배우자가 남한사람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제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관련 경험에 관한 문제점과 인권침해 관련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정책적 제언

중국에서 국적도 없이 사실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감시와 협박, 납치, 북송에 대한 불안감, 내 아이를 가졌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낙태를 당하면서 인권침해에 노출되지만,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다.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를 비교 분석해 보면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탈북 동기가 북한의 경제적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나야 할 가장 근본적인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단순히 ‘경제적 이주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존권의 차원에서 탈북을 감행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며, 특히 북한 여성들은 가족의 생존권의 차원에서 탈북을 감행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기에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 인도적 난민의 지위(humanitarian status)를 부여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으로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 다니며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대한 보호에 한국 정부의 관심도 필요하다. 경향신문에 실린 “돼지취급 받으며 중국으로 팔려 가는 탈북 여성들, 대한민국의 문제다”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에서 ‘외신은 이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국내 주요 언론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 팔려 다니는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전례 역시 없다.’ 하였다(경향신문, 2019. 08. 24). 이렇게 한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심리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받은 심리·정서적 치료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인터뷰 끝나고 힘든 질문에 답하는데 힘들지 않았냐는 연구자의 물음에 연구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오히려 자신들의 가슴속에 맺혀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 가슴속 용어리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2. 실천적 제언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 가 국적 없는 삶을 살면서 감시와 협박, 의사 결정권이 없는 삶과 북송에 대한 불안감으로 더는 마음을 졸이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한국에 대한 기대를 안고, 한국을 선택하여 입국하였고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아 주민등록증을 받았지만 조선족보다 못하고 동남아 외국인 인양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또 다른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을 사이도 없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면서 차별과 편견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이탈주민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에서 먹고살 수 있는 돈과 집을 준다는 잘못된 정보는 결국 자신들에 낸 세금으로 먹고산다고 생각하는 남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장착하는 과정에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외국인처럼 다르게 본다는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이 있지만, 자신을 각성시키고 바꾸어 가면서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 살아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한편, 중국에서 국적 없이 인신매매로 팔려 가 감시와 무시, 북송의 두려움으로 마음 졸이며 숨어서 살았던 중국에서의 인권침해보다, 한국에서 국적은 주어지고 말이 통하는 한민족이지만 같은 국민에게서 받은 인권침해의 말 한마디에 더 큰 상처로 남아 가슴에 맺혀 자살 시도, 대인기피증, 다시 중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였다.

또 연구 참여자들의 지역과 가정환경을 살펴보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에서는 북한과 가깝고 말투가 비슷하여 동질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을 잘 대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가 남한 출신으로 가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편견 없는 가정에서 살고있는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과 편견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격려가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줌으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내 이웃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제도적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남

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정책과 대책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3.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인터뷰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각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참여자를 포함하여 중국과 한국에서뿐 아니라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을 포함한 다각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절 제한점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으로는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의 5명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으로 인천광역시, 서울,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로 폭넓은 연령대와 지역의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참고문헌

- 김경숙. 2017. “탈북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경미. 2018. “탈북이탈주민의 상호문화적응과 정신건강의 관계 : 사회적 낙인의 조절효과”. 전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200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웅.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숙. 2018. “북한이탈여성의 ‘주체적 삶’에 관한 생애사적 고찰 - H. Arendt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여주. 2014.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중국 조선족 배우자의 한국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준. 2009. “북한이탈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진. 2019.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상호작용 고정성 각각 심리적 불안이 조직 정체성 지각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영. 2018.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조절 효과”. 협성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 김혜원. 2019.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중태. 2014.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과 적응 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 - 남한출신 관리자와 북한출신 근로자의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명선. 2015.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문화적응 결정요인의 통합적 고찰 - 자기 효능감, 상호적지지, 경제적 적응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이경. 2019. “탈북여성의 가족해체 및 재구성 특성과 자녀양육 경험 - 다자녀를 둔 여성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형태. 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형태·이수천·박재학. 2020. “자료분석실전 - 논문작성을 위한 SPSS 코팅에서 분석까지-”. 동문사.
- 곽해룡. 2002.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 인권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 김재영. 2005.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관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희. 2021.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에 관한 질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병의. 2016. “한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해성. 2011.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초기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진. 2019.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직무적합성과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 심리적 불안이 조직 정체성 지각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

- 향”.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철용. 2019. “외국인 소수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편견, 사회적 거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성남. 2019. “탈북민의 영국 이주 생활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연. 2018.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어 사용 경험에서 나타나는 사회화용적 문제 연구: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대욱. 202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형성 과정 연구 : 미디어 보도와 수용자 인식에 대한 의미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학술교육원』 . 25권(1호):185p~207p.
- 김석향·김미주·김엘렌·윤보영·이수연·장명선·손정원·안정은. 2019.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1-160000-000739-01.
- 김화순. 2010.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연구”. 『통일과 평화』 , (2집 2호). pp. 76~110.
-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구사회복지학』 . (제57권 제1호). pp. 193-217.
- 김영수·신미녀·현인애·이용화·강인성·박정아. 2010.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 사단법인 신아시아연구소.
- 김윤나. 2014.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교육 : 탈북 여성을 중심으로. 교육학회 학술대회. pp. 1-32
- 김명선. 2019.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효능감이 남한사회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적응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 김태훈. 2019. 6. 18.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pp.

24.

- 명정화. 2015. “컴퓨터 직업훈련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순. 2014.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 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민음. 2019.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윤숙·윤인진. 2007.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 사회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회』 . 41권(1호): pp. 124~155.
- 박순성·고유환·소라미·이임하·이영희·전미영·차문석. 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동국대학교 북한일상 생활연구센터.
- 백남설. 2018.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미녀. 2010.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통일준비.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19집 1호).
- 서영애. 2019. “하종오 시에 나타난 다문화 현실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보혁·정상우·김윤나. 2017.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의 당위성 고찰. 교육문화연구 일반논문”. pp. 49~71.
- 이금순·강신창·김병로·김수암·안혜영·오승렬·윤여상·이우영.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 (합동연구총서 03-07).
- 이소희·이원웅·이해우·전진용·노진원·한우리. 2017. 북한이탈주민 인권 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1-1620000-000664-01.

- 이학인. 20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4.
- 양옥경·최혜지·이민영·김선화·김성남·임세와·최서경. 2017. 북한이탈주민 생활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지영. 2019.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적응에 관한 연구 - 남한 직업 생활 및 적응 교육 서베이-”.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승진. 2006.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인권보호 관한 연구 : 인신매매와 강제송환 문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혜. 2017. “두 탈북청소년의 학교 교육 경험과 정체성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태희. 2003.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학위 논문.
- 이형종. 2018. “북한이탈주민 공감 능력과 경험 연구 - 사회통합의 관점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용화. 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연구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 이지연. 2017. “탈북 여성의 경계 넘기와 주체 형성 - 탈냉전 분단국가에서의 초국가적 실천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은경. 2018.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응과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화진. 2010. “북한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혜영. 2000. “북한이탈주민 남한 사회 적응과 사회복지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병율. 2017. ‘재중(在中)탈북자’ 국적 문제와 보호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민숙. 2017. “북한이탈여성의 중년기 이후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 Mandelbaum의 분석 방법론 적용-”.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수경. 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숙경. 2020. “북한 이탈 어머니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내·외적 변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논문.
- 양경석. 201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수경. 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박사 학위논문.
- 안혜영. 200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정연. 2019. “북한이탈 미혼모의 체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청구논문.
- 윤지혜. 2019.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시도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염유식·김여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한국 사회학 연구논문 제45집 2호. pp. 91~129
- 윤여진·김춘석·김석향·김선희·김화순·윤여상·이원웅·임순희. 2014. 북한이

- 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1-1620000-00059-01.
- 조아영. 2015. “남한 내 북한이탈여성의 차별 경험 과정”. 여성연구 2015.
Vol. 89 No2. pp. 37~82.
- 정영선. 2018.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2018. Vol. 98 No2. pp. 97~135.
- 정상우·강은영. 20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Vol. 10. No.2 August 2017: pp.
175~208.
- 정인성. 2021. 202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제
437001호.
- _____. 2021. 2020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제
437001호.
- 정상우·김윤나·최정호·최 희. 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
구. 『국가인권위원회』. 11-1620000-00062601.
- 조민희. 2019.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방안 연구 - 재사회를 위한
교육훈련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서영. 1999.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NGOs 활동
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석광. 2019. “북한이탈주민 금융사기 범죄 피해자 특성에 관한 연구 -
‘한성무역사건’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예숙. 2019.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
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20. 07. 20.) 법률 제17126호_국가인권위원회법.
_____ (2019). 결정집례 11집.
- 남북하나재단(2020).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_____ (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_____ (202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0주년 기념백서』. 남북하나재단.
- 통일부. 2020년 6월.
- 데일리굿뉴스. 2019. “3만 탈북민, 우리 사회의 인권 현주소는?”. 2019. 05. 25.
- 여성신문. 2005. “인신매매로 노예 같은 삶 사는 북한이탈여성들”. 2005. 05. 12.
- 아시아타임즈. 2019. 인권위“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강화해야”. 2018. 09. 26.
- <https://unikoreablog.tistory.com/436> ;통일 미래의 꿈
- 경향신문. 2019 “돼지취급 받으며 중국 팔려 가는 탈북여성들, 대한민국의 문제다” 2019. 08. 24.

부록 1

연 구 참 여 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본인은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경험’이라는 연구의 인터뷰에 앞서 연구개요와 연구목적,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참여동의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종료 후 자료의 폐기, 인터뷰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인터뷰 참여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문에 참여합니다.”

2021년 5월 일

연구 참여자	성 명	(서명)
--------	-----	------

연구자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배 성 희 (서명)

전화번호 : 010-0000-000

0000000@daum.net

연 구 참 여 동 의 서

(연구자 보관용)

“본인은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경험’이라는 연구의 인터뷰에 앞서 연구개요와 연구목적,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참여동의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종료 후 자료의 폐기, 인터뷰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인터뷰 참여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문에 참여합니다.”

2021년 5월 일

연구 참여자	성 명	(서명)
--------	-----	------

연구자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배 성희 (서명)

전화번호 : 010-0000-0000

00000000@daum.net

부록 2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경험 연구

인터뷰 물음지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경험 연구』에 관한 인터뷰

인적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년	월	일
3) 성별	1) 남자	2) 여자	
4) 남한 거주지역			
5) 북한탈북년도 (마지막 도강했던 연도)	년	년	
6) 남한 입국년도	년	월	

인터뷰 질문

6. 중국에서 겪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7. 남한에 오신 이후 겪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8. 중국과 한국에서 겪으신 인권 문제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다르지요?
9. 중국에서 겪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10. 한국에서 겪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BSTRACT

A Stud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Women

Bae Sung 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Christian School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oung-Ta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uman rights violation-related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China and South Korea, and the impact of human rights violation-related experiences in China and South Korea on social settlement.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views with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China', 'Experience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It was organized into 3 components, 7 categories, and 19 subcategories. First, the experience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China were divided into 3 categories and 10 subcategories. The study participants found that North Korean women were suffering from hardships of living as North Korea's economic hardship reached a high level from the mid-1990s. I am deceived by the saying that if I go to China, I can prepare a business and come back, but I go to China, but I have no choice in a foreign country that does not speak a wor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brokers, they experience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forced marriages through human trafficking. Second, the experience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were organized into one category and three subcategories. North Korean refugee women were exposed to other types of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uth Korea as well as discrimination in China. Al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North Korean defectors as South Korean citizens and gave them nationality, North Korean defectors are aware that they are treated as foreigners or strangers. Third,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s settlement process in South Korea consisted of three categories and six subcategories. It can be seen that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refugee women differ depending on the region. In additio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overcom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depending on what thoughts and minds the participants have, but other participants find that a word inadvertently thrown by South Koreans in work and daily life remains more hurtful than a weapon. Fourth, the influence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s experience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China and South Korea was examined. The study participants said that although they experienced more outrage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China, they did not remain hurt because the language did not work, but in Korea, they believed that they were a Korean people who could communicate in the same language, but were excluded by national ideology and treated as foreigner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overcome the so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at arise from the ignorance of ignorant people who look at North Korean defectors, there are people who hide and wither away, In order to overcom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 am working tirelessly, realizing that the way to settle quickly is to awaken myself more, lower the standard of happiness, and understand Korean society quickly. South Koreans' understanding, interest and encourag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settling in South Korea will be reborn as a true South Korea by giving them a sense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bility.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 woman, violation of human rights, So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mind and emotions, pain in the heart, Exclusion, ethnic ideology, Discriminatory treatment